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

본 책의 내용은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5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6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7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8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9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10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11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기획재정부) 12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13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14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15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16
-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 (기획재정부) 17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1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기획재정부) 19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0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1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2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3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기획재정부) 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5
-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기획재정부) 26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기획재정부) 27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기획재정부) 28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기획재정부) 29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30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기획재정부) 31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기획재정부) 32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3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 34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기획재정부) 35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6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7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38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39
-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40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41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42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기획재정부) 43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기획재정부) 44
-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기획재정부) 45
-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획재정부) 46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47
-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기획재정부) 48
-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기획재정부) 49
-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기획재정부) 50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국세청) 51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국세청) 52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관세청) 53
-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관세청) 54
- 청년희망적금 출시 (금융위원회) 55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금융위원회) 56
-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금융위원회) 57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 5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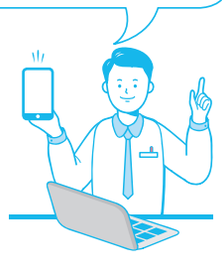

02 교육·보육·가족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교육부) 64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교육부) 65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교육부) 66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68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70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교육부) 71
-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육부) 72
- 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74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도입 (교육부) 75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교육부) 76
-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교육부) 77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78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교육부) 79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교육부) 80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교육부) 81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교육부) 82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교육부) 83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부) 84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 85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86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87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88
-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여성가족부) 89
-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90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여성가족부) 91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92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93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94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여성가족부) 9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3 보건·복지·고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05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06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보건복지부) 107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보건복지부) 108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109
-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보건복지부) 110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12
-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 명 운영 (보건복지부) 113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보건복지부) 114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11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16
- 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보건복지부) 117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118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보건복지부) 119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120
-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보건복지부) 12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22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 123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124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125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2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127
- 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보건복지부) 12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129
-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보건복지부) 130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131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132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133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134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노동부) 135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노동부) 137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38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139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140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141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142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 (고용노동부) 143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노동부) 144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14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고용노동부) 146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147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148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149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고용노동부) 15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151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고용노동부) 152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고용노동부) 153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154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155
-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56
-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7
-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확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58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59
-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60
-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61
-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질병관리청) 162
-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질병관리청) 163
-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국내 도입 (질병관리청) 164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질병관리청) 165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질병관리청) 166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질병관리청) 167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질병관리청) 168
- 「주간 건강과 질병」 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 16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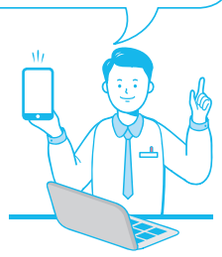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04 문화·체육·관광

-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73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74
-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7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76
-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77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문화재청) 178

05 환경·기상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18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183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환경부) 184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환경부) 185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부) 186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환경부) 187
-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환경부) 188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환경부) 189
-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환경부) 190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환경부) 191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192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환경부) 193
-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상청) 194
-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기상청) 195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
-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
-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
-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03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4
-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5
-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206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207
-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08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209
- "여성기업 주간" 법적 근거 최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210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211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특허청) 212
-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특허청) 213
-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청) 214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215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216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217

07 국토·교통

-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국토교통부) 220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 221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222
-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 22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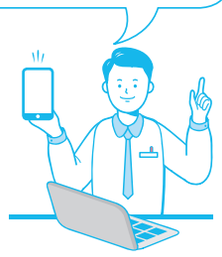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08 농림·수산·식품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229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30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31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 232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33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34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5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36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237
-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8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39
-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40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41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42
-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3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44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45
-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46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247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248
-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9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0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1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2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53
-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254
-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255
-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256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해양수산부) 257
-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해양수산부) 259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260
-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대 1년 이상 임대 (해양수산부) 261
-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해양수산부) 262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및 지속 운영 (해양수산부) 263

-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해양수산부) 264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착수 및 보급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265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고시 (해양수산부) 266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청) 267

09 국방·병무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273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국방부) 274
-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국방부) 275
-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국방부) 276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국방부) 277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278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국방부) 279
-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가보훈처) 280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국가보훈처) 281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국가보훈처) 282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무청) 283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병무청) 284
-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285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병무청) 286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무청) 287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288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289
-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병무청) 290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무청) 291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무청) 292
-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위사업청) 293
-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방위사업청) 294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295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296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방위사업청) 297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98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9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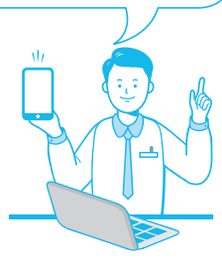

10 행정·안전·질서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외교부) 307
-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외교부) 308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법무부) 309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법무부) 310
-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법무부) 311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법무부) 312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313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315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행정안전부) 316
-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317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행정안전부) 318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319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320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인사혁신처) 321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322
-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법제처) 323
-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조달청) 324
- 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조달청) 325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조달청) 326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경찰청) 327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경찰청) 328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경찰청) 329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경찰청) 330
-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소방청) 331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소방청) 332
-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청) 333
-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해양경찰청) 334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33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336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337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338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339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340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341

-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42
-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343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344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345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346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347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348
-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349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350
-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35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352
-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국민권익위원회) 353
-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354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5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6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7
-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5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6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7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8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9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10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1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12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13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4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15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16
-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 17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19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20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21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22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23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25
-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26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27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28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29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30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31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32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33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34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35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36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37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38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39
-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40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41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42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43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44
-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45
-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6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47
-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48
-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49
-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50

교육부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64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65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66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68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70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71
-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72
- 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74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도입 75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76
-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77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78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79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80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81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82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83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84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200
-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201
-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202

외교부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307
-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308

법무부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309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310
-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311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312

국방부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273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274
-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275
-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276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277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78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279

행정안전부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313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315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316
-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317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318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319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173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174
-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조성 17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176
-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177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105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06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29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230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231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232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233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234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235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236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237
-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238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239
-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240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241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242
-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243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244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245
-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246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247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248
-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49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50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51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252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53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32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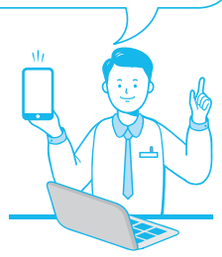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203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204
-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5
-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206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207
-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208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209

보건복지부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107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108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109
-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110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112
-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 명 운영 113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114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11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116
- 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117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118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119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120
-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12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122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123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124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125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12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사업 실시 127
- 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12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129
-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130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131

환경부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18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83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184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185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186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187
-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188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189
-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190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191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192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193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132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133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134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35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137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138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139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140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1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142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143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144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14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146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147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148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149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15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151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152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15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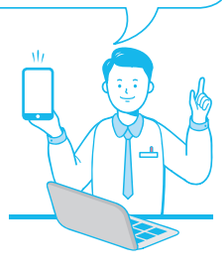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85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86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87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88
-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89
-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90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91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92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93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94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95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154

국토교통부

-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220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221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222
-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223

해양수산부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155
-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254
-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 255
-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256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257
-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259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260
-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대 1년 이상 임대 261
-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262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및 지속 운영 263
-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264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착수 및 보급지원 확대 265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고시 266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주간" 법적 근거 최초 마련 210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280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281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282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321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322

법제처

-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323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156
-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157
-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확대 시행 158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159
-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160
-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161

국세청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51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52

관세청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53
-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54

조달청

-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324
- 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325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326

병무청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283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284
-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285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286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287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288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289
-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290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291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292

방위사업청

-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293
-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294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295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296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297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298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29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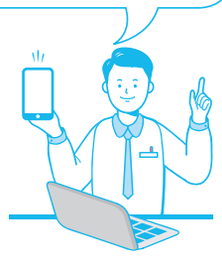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경찰청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327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328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329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330

소방청

-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331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332
-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333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178

산림청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267

특허청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211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212
-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213
-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214

질병관리청

-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162
-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163
-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국내 도입 164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165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166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167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168
- 「주간 건강과 질병」 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169

기상청

-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194
-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195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334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33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336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337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338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339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340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341
-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342
-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343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344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345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346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347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348
-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349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350
-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351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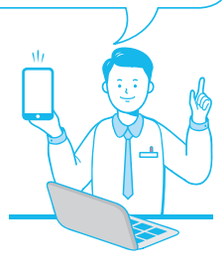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 출시 55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56
-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57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58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52
-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353
-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354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215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216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2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355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356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357
-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35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월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5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6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7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8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9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10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11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기획재정부) 12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13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14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15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16
-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 (기획재정부) 17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1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기획재정부) 19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0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1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2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3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기획재정부) 24
-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기획재정부) 26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기획재정부) 27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기획재정부) 28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기획재정부) 29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30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기획재정부) 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33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 34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기획재정부) 35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6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37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38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39
-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40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41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42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기획재정부) 43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기획재정부) 44
-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기획재정부) 45
-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획재정부) 46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47
-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기획재정부) 48
-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기획재정부) 49
-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기획재정부) 50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국세청) 51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국세청) 52
-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관세청) 54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금융위원회) 56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 58
-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교육부) 77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교육부) 83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 85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86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87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88
-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여성가족부) 89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여성가족부) 91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92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93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여성가족부) 95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06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보건복지부) 108
-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 명 운영 (보건복지부) 113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115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보건복지부) 119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22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125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132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133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노동부) 135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노동부) 137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38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139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140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142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143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노동부) 144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14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고용노동부) 146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147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148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149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151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고용노동부) 153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154
-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56
-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57
-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질병관리청) 162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질병관리청) 168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182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부) 186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환경부) 189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환경부) 191
-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4
-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08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215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 221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 232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33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5
-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3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248
-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9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0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1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2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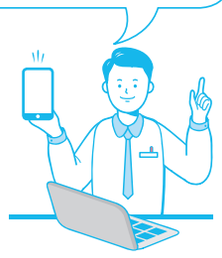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53
-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대 1년 이상 임대 (해양수산부) 261
-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해양수산부) 262
-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해양수산부) 264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273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국방부) 274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국방부) 279
-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가보훈처) 280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국가보훈처) 282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병무청) 284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병무청) 286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무청) 287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288
-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병무청) 290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무청) 291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무청) 292
-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위사업청) 293
-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방위사업청) 294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296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방위사업청) 297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98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299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법무부) 309
-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법무부) 311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313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315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행정안전부) 316
-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317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인사혁신처) 321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322
-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조달청) 324
- 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조달청) 325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조달청) 326
-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소방청) 331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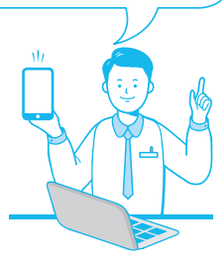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2월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교육부) 64
- 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74
-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보건복지부) 110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131
-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확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58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74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환경부) 193
-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03
-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206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237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및 지속 운영 (해양수산부) 263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무청) 283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법무부) 310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320
-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청) 333
-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343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344
-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국민권익위원회) 353

3월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교육부) 65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교육부) 66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70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교육부) 71
-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육부) 72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교육부) 76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교육부) 79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교육부) 81
-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질병관리청) 163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질병관리청) 16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183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
-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국토교통부) 220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해양수산부) 257
-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국방부) 276
-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285
-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해양경찰청) 334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6

4월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보건복지부) 107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141
- 「주간 건강과 질병」 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 169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환경부) 187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192
-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상청) 194
-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5
- "여성기업 주간" 법적 근거 최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210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211
-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특허청) 213
-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청) 214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216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30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착수 및 보급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265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행정안전부) 318
-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법제처) 323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경찰청) 327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경찰청) 328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경찰청) 329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경찰청) 330

5월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134
-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352

6월

-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환경부) 190
-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기상청) 195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209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특허청) 212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44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247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319
-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354

기 타 : 2021년 기 시행되었거나 2022년 시행 예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5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기획재정부) 32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관세청) 53
- 청년희망적금 출시 (금융위원회) 55
-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금융위원회) 57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68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도입 (교육부) 75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78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교육부) 80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교육부) 82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부) 84
-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90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94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05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109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12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보건복지부) 114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16
- 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보건복지부) 117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118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120
-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보건복지부) 121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 12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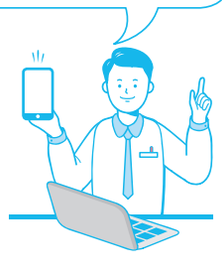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124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2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127
- 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보건복지부) 128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129
-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보건복지부) 130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고용노동부) 150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고용노동부) 152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155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59
-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60
-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61
-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국내 도입 (질병관리청) 164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질병관리청) 165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질병관리청) 167
-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73
-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7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76
-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77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문화재청) 178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환경부) 184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환경부) 185
-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환경부) 188
-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207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217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222
-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 223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229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31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234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36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39
-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40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41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42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45
-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46
-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254
-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255
-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256
-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해양수산부) 259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260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고시 (해양수산부) 266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청) 267
-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국방부) 275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국방부) 277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278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국가보훈처) 281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289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295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외교부) 307
-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외교부) 308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법무부) 312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소방청) 332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33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336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337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338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339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340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341
-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42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345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346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347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348
-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349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350
-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351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7
-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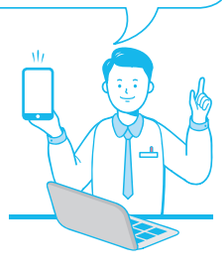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기존은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하였습니다.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R&D 비용(%)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After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6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 만원
홑벌이가구	3,000 만원
맞벌이가구	3,600 만원

After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 만원
홑벌이가구	3,200 만원
맞벌이가구	3,800 만원

3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4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55

청년희망적금 출시

시행일 : 2022년 1분기

청년희망적금 출시

•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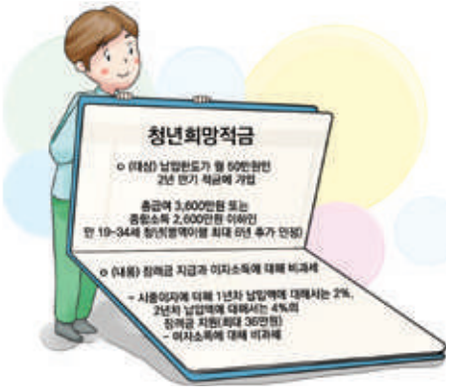

5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8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6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9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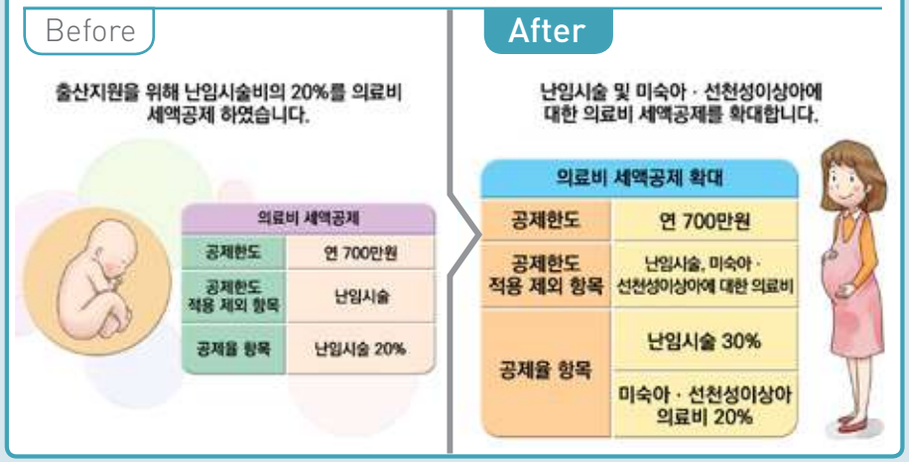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상향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❶ 연구개발 비용(%)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❷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추진배경**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 **주요내용**
  -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을 기존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우대하여 세제지원
- **시행일** '21.7.1.~'24.12.31.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 지원 • 주요내용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 700만원)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추진배경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주요내용 • (현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3천만원 비과세 • (개정)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행사하는 분부터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 (임차시기 요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시행일: • (개인)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50만원 미만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
③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 상향	• 추진배경: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30만원 • (개정) 50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창업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까지
  -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종전		개정	
요 건	다음 ❶과 ❷ 모두 충족 ❶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❷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2%	15일 이내 지급	0.5%
	16~60일 지급	0.1%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 **주요내용**
  - (공제요건) 공제요건이 어음결제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 요건 단순화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
  - (공제율) 지급기일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하고 구간을 세분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시행령 개정)입니다.

▣ 현행 공제대상 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추진배경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초진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상기술)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추가(구체적 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특구)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사후관리 규정)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	•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 주요내용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지역특구제도에 사후관리규정 신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해산, 특구 밖으로 이전분부터 적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성과급 요건)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종전)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한해 적용→ (개정)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

- (중소기업 공제율) 10% → 15%로 상향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지원
• 주요내용	• 성과급요건 완화 :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 요건 삭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0% → 15% 상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 추진배경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주요내용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추진배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2년 이상 15년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2021, 2022년 100만원 추가공제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요건이 정비됩니다.

▣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년 31일 까지 • 적용요건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 • 공제대상 : 특수관계인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규정이 보완됩니다.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후관리규정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납부 • 시행일 (사후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 추진배경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감면요건 추가 : 이전 본사의 투자·근무인원 요건 추가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됩니다.

▣ 국내복귀 요건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 국내복귀 기한 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 2년 이내 • 시행일 (요건 완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내 사업장을 신 · 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 추진배경 공사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중복지원 배제 • 주요내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추진배경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현행) 정기분 지급 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개정) 하반기분 자급 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상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 (현행)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개정)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합니다.

▣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추진배경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필요 • 주요내용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시행일 • (개인)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경감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었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
• 주요내용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하였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6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23.12.31.)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1)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 행	개 정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구분	제출내용
취득 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 시	처분내역
〈추 가〉	

※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

구분	제출내용
취득 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 시	처분내역
보유 시	보유내역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추진배경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자료에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1)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7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추진배경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
•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세제혜택 허용 • 주요내용 직계비속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 (현행) 15억원까지 공제 허용

▣ (개정) 20억원까지 공제 허용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추진배경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익 제고 • 주요내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B2B) 포함

▣ 간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서식은 '22년1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 추진배경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 주요내용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에 대해 5년간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2022년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 확대	• 추진배경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 확대 • 주요내용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반품(수출)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22년 1월 1일부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 · 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 · 소비가 가능합니다.

*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 · 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원양산업 발전 지원 • 주요내용 지금까지 원양어선용 선박 · 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수출입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 · 소비가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 · 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규정(관세법 제223조의2) 위반 시에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 추진배경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통관질서 관련 의무(일시양륙 및 환적신고 의무,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 • 법상 의무(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및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044-215-4473)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15)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됩니다.(「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수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작성이 간편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원산지간이확인품목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 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분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21.11.12.)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수출기업의 FTA 활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주요내용	•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필요 • (개선)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관세청장이 고시)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044-215-4473)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15)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이 수리 · 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었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예시: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21.11월)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 추진배경	싱가포르를 통한 물품 수리·개조 시 관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중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044-215-4473)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15)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 **추진배경** 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044-215-4473)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1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범위 합리화
- **주요내용**
  - (기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개선)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 통보를 받는 경우까지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65)

국유일반재산의 각종 신청 및 결과확인을 현장사무실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부·변상금·매각 관련 신청, 단계별 처리이력 및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 서비스 : https://gpminwon.kamco.or.kr
- ▣ 신청자의 업무담당자, 검토기한 등의 정보 및 계약내역·납부/납부예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 고객의 단순 문의·요청 업무에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통해 대기없이 기본 안내를 제공합니다.
-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개시됩니다.

참고 민원 단계별 서비스 안내 예시

대부 관련 단계별 서비스 안내(예)

대부신청 접수 ▶ 대부계약 체결 ▶ 차년도 대부료 대부료 납부기일 ▶ 대부료 미납 ▶ 대부계약 해지

구체적인 민원신청 진행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민원구분	신청일자	소재지	계약번호	물건상태	진행상태	담당
부동산대부신청	2020. 08.11	부산광역시 중구 _526-71		대부대상(수의)	처리중	부산지점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3)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과 다른 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시범특례사업 종료 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제도 도입

- **추진배경** 혁신 · 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주요내용**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 (대상) 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제도개선위 의결)
  - (기간) 2년 원칙, 기재부 협의 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시행일** 2022년 1분기(예정)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2)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됩니다.

▣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200억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
-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항목을 종합심사낙찰제 안전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안전관리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

대형 공공공사 안전평가 강화	• 추진배경 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근로자 보호 • 주요내용 •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중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개선(가점 → 가 · 감점 전환)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안전평가항목(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종합심사낙찰제에 도입 평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044-204-3919)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됩니다.

*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지정기간 만료전 공공기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④ 별표6의7)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 이관	• 추진배경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 종전 : 공익법인(의무보고) → 주무관청(의무점검) → 국세청(취소검토) → 기획재정부(지정취소) - 개정 : 공익법인(의무보고) → 국세청(의무점검) → 국세청(취소검토) → 기획재정부(지정취소)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분석2팀 (☎ 044-204-4073)
신고2팀 (☎ 044-204-404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제출대상 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21.6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8월)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시행

- **추진배경**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 **주요내용**
  -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4-481-7832)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2022년 7월 1일부터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서신 제외)에 대해 사전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이에 따라 세관은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위험우편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반송 등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우정당국에서 보다 충실히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관세법 개정안(제256조의2 신설)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 **추진배경** 국제적으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EAD*) 교환이 의무화 됨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내 법령 정비
  - * EAD(electronic advance data)는 ITMATT(CN23 세관신고서)와 PREDES(우편물 발송) 정보로 구성, 물품 적재전(pre-loading) 상대 수입국에 제공
- **주요내용**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41)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됩니다.

▣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관세법 개정안(제237조)

안전성검사 결과 통관보류 근거 규정 신설	• 추진배경 통관보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화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 도모 • 주요내용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관세법」제246조의3제1항: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7)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청년희망적금 출시	• 추진배경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행일 2022년 1분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2)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한 번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2.1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추진배경**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중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00-2644)

국내 및 해외(미국)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 현재는 해외주식에 한하여 일부 증권사(2개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지고,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 **추진배경**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1.11.12.)
- **주요내용**
  -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예) A고객 0.4주, B고객 0.3주 주문 → 증권사가 1주(온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
  -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수익증권발행신탁)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 **시행일** (국내주식) '22년 3분기 / (해외주식) '21년 4분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02-2100-2824)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2단계(2022년 7월 1일부터 3단계) 조기 시행

▣ 차주단위DSR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2단계, '22.1월~)

* 1단계 :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1.10.26.)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 **추진배경**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 **주요내용**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3단계 '22.7월)

	'21.7월 전	1단계('21.7월)	2단계('22.1월)	3단계('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①/② 유지)	(①/②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3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64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Before

종전에는 사립 초 · 중 · 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After

사립 초 · 중 · 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65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Before

종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원 신규채용이 가능하였습니다.

After

사립 초 · 중 · 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66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Before

지금까지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After

사립학교 경영자 · 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도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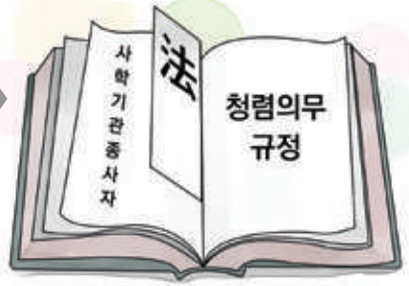

4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68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2021년		2022년	
학자금 지원 5~8구간		학자금 지원 5~8구간	
5~6구간 : 368 만원 7구간 : 120 만원 8구간 : 67.5 만원		5구간 6구간	390 만원
		7구간 8구간	350 만원
기초 · 차상위		기초 · 차상위	
520 만원		첫째 자녀 700 만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450 만원 ~ 520 만원		등록금 전액	

5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70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After

저소득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초	331,000
중	466,000
고	554,000

평균 21.1% 상승

6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71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시행일 : 2022년 3월

「교 ·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추진

• 초 · 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학생 스스로 참여를 희망한다면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교 · 사대생의 경우 특히 장학금 외에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 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85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After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8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86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1인가구의 고독 · 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 · 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교육부 학교정책과 (☎ 044-203-6441)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법령

- **추진배경**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 **주요내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044-203-6464)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②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거나, ③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 이후에 공고된 신규채용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입법예고안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 044-203-6441)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합니다.

▣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행동강령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청렴의무)

–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5에서 같다)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 **주요내용**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27, 6678)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1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22년	Ⅰ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셋째 · 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확대

- **추진배경**
  -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 · 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학자금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 합리성 제고
- **주요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단가를 인상
    - (5~8구간)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연간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에 자녀수에 따른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사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 **시행일**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946)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 '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초등학생은 331천원, 중학생은 466천원, 고등학생은 554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하였습니다.

〈'22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및 인상금액〉

구 분		'21	'22	
		지원금액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 활동 지원비	초	286,000	331,000	+45,000원 (15.7%)
	중	376,000	466,000	+90,000원 (23.9%)
	고	448,000	554,000	+106,000원 (23.7%)
평 균			21.1% ↑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적용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추진배경**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 **주요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 044-203-7203)

2022년 3월 이후,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초·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동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잔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추진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 학습 등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교원 외 교·사대생 등 가능한 모든 교수자원 집중 투입
- **주요내용**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1~4명)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 지원하고 대학생(튜터)에 국가근로장학금 등* 지급
  * 교·사대생(교육과, 교직과정 포함)의 경우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60시간/2학점)으로 인정
- **시행일** 2022년 3월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 044-203-7083)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합니다.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변경됩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자문사항으로 유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 · 집행한다.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 ·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044-203-7092)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21.8.10., 9.24.)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됩니다.

▣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원의 결격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임원취임승인 취소 후 5→10년,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후 3→6년, 교원으로 파면된 후 5→10년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소송 시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에 대해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채용의 투명성도 제고합니다.

▣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일시·장소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의 통과 보도자료 /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임원의 결격기간 및 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임('21.12.25. 시행)
  - 임시이사 선임요건 명확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22.2.11. 시행)
  -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22.2.11. 시행)
  - 기금운영심의회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직원·재학생 참여 ('22.3.25. 시행)
  -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 이사회 소집·일자 등 공지('22.3.25. 시행)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 ('22.8.11. 시행)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71)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이 유예되어 상환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보다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주요내용

- **대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
- **지원기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대출연령** 만 40세 이하
- **대출규모**
  - 등록금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한도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 대출원금 기준)
  - 생활비 : 연 3백만원(학기당 1.5백만원)
-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2022년 기준, 1.7%)
- **상환방법**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기준상환율(25%)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044-203-6522~3)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고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함
- **주요내용**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도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교육부 학술진흥과 (☎ 044-203-6653)

해외 주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핵심 전자저널을 도입하고, 대학의 수요가 높은 학술DB·일반저널 등 대학라이선스(전자정보이용권) 구독 지원을 확대합니다.

※ 핵심전자저널 : ('21) 2종 → ('22년) 3종
학술 DB 및 일반저널 : ('21) 46종 → ('22) 54종

▣ 이는 교육 및 연구 관련 수요가 높은 전자정보를 국가와 대학이 대응 투자하여 대학라이선스로 구독하는 사업으로, 구독대학 이용자는 언제든지 논문을 이용할 수 있고, 비구독 대학 연구자는 일정 시간 동안(16:00~다음날 09:00)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에서 무료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연구자의 학술연구정보 접근성 제고 및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대학 연구자들이 원하는 핵심전자저널 도입 및 학술 DB ·일반저널 대학 라이선스 지원 확대
    - 핵심전자저널 : ('21) 2종패키지 → ('22) 3종패키지
    - 학술DB 및 일반저널 : ('21) 46종패키지 → ('22) 54종패키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86)

시·공간 제약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철학·과학·환경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최고 석학 강좌를 방송 프로그램과 K-MOOC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 해외 MOOC 플랫폼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가상 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합니다.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 추진배경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 K-MOOC 추진
• 주요내용	• 국내외석학 강좌,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등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강좌 제공, 플랫폼 고도화
•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2월) → 신규강좌 선정결과 발표(4월) → 신규강좌 제공 및 플랫폼 고도화(하반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 044-203-7185)

2022년 3월 25일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이하 「원격교육법」)이 시행됩니다.

▣ 이번 법률에 근거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원격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8.3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 추진배경	원격교육 질 제고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여
• 주요내용	•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대체학습 등 지원)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044-203-6733)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기후변화, 물 문제, 에너지, 생태계 파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인간·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학교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교육기본법 개정	
• 추진배경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54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이 제외됩니다.

▣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불가능(당구장은 초등학교 제외)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추진배경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
•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제외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541)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이 강화됩니다.

▣ 기존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경우 현행 점검주기(연 2회)에 맞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보완 등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질 등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 강화 실시

- **추진배경**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검 규정 강화
- **주요내용**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 주요내용
  - (점검횟수) 기존 연 1회 이상 점검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측정 변경
  - (후속조치) 관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하도록 변경
  - (측정장비)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의 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 044-203-7135)

종합적인 교육시설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검증하고 위해요인을 확인해주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인증 취득 학교가 확대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21.5.13.) 마련 이후 '22년은 1,800개교(누적 2,000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2년에도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안전인증제 등 안전제도 실시

- **추진배경**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증·확인 제도 실시
- **주요내용**
  - (인증 대상)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3,865개동
  - (인증 등급/주기) 최우수 10년주기, 우수 5년주기
  - (심사기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 심사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02-2100-3201~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21.7월)되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합니다.

※ 법률공포 : 2021.7.20., 시행일 : 2022.7.21.

▣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가진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을 수립 및 모니터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

국가교육위원회 개요	• 주요내용 •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사·예산 독립성 인정) •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 ※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학생·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 대교협 추천 1명, 전문대교협 추천 1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광역지자체협의회 추천 1명, 당연직 2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 •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소관 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담당 •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 및 사무처 •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2)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개정 「청소년 보호법」 2022.1.1. 시행)

▣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추진배경 게임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 일원화 •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6)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추진 가족센터 선정	• 추진배경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반영하여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 및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

▣ 아울러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합니다.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장기적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재진입 시 질 낮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 사전예방이 중요 • 주요내용 • 여성고용유지 시범사업 – 다빈도 경단원인(선택·집중) 해소와 직결되는 서비스(전문인력 투입)를 선제·전략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원스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어,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2022년부터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 단,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1)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 * ('21) 월 11,500원 → ('22) 월 12,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 • 시행일 (9~18세) 2022년 1월 1일, (19~24세) 2022년 5월 1일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3, 6345)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부모 중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족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 추진배경 청소년부모 가족기능 회복 및 자녀양육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역량강화 지원 -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합니다.

▣ 다만, 청소년부모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돌봄취약계층에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지원

• **주요내용**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추가 지원)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부모 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90%, 시간제 가형 취학 75→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합니다.

▣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 5천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추진배경**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4)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추진배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 **주요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4)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의 정착 장기화에 따라 증가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 필요
- **주요내용**
  - 읽기, 쓰기 등 기본학습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진로·취업컨설팅 연계
- **시행일** 2022년 1월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5, 6426)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 안내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구조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
• 지원기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6406)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2차)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개 채널 모두에서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채널 상관없이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우편으로만 발송

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방법은?	
• 확인방법	'성범죄자알림e' 인터넷 사이트(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기) • 이름, 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등 다양한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설정한 시간(없음, 1시간, 12시간, 24시간)마다 내 위치 기반으로 2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확인
• 확인내용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시행일	2022년 1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Before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

After

영아기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생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8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익활동 0.8만개, 사회서비스형 1만개 등 '21년 대비 2.5만개 확대

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9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5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10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Before

그동안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 1,200억원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 퇴원환자 연계
- 중증응급질환 협력
- 감염 및 환자 안전
13개 시도별 지원단 운영

After

6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1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시행일 : 2022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픈 것 소득 걱정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32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After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8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3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Before

종전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After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9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34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10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35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구분	현행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100%

After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합니다.

구분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1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37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After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1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56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Before

종전에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After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57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시행일 : 2022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수산물 안전관리는 주로 유통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fter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기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 · 운영합니다

14 질병관리청

자세한 내용은 p.162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Before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현행법 제70조의3 제1항)

After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시, 방역 · 검사 · 치료 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제2항 신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여성농업인 광장홈페이지>정책자료>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개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9천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74)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제외

■ 외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7)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7),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0)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그리고,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집중투자 사업 주요 내용

- **첫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 받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지급방법) 바우처 1회 지급(일시금), 국민행복카드(국내 사용)
  - (사용처)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지급시기) '22. 4. 1.부터
    - '22.1~3월생은 예외적으로 '22.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2.4.1.~'23.3.31.
- **영아수당**
  - 현재 차등화된 양육수당(15~20만원)과 부모보육료(약 50만원) 지원을 '22.1월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 대상 통합 지급
    - 부모 직접양육 또는 가족·이웃 등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공익활동 0.8만개, 사회서비스형 1.5만개 등 '21년 대비 2.5만개 확대

▣ '22년 노인일자리를 84.5만개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2.1월부터 조기 추진합니다.

▣ 또한, 신노년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 **추진배경**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① 노인일자리 확대
  - 공익활동 0.8만명, 사회서비스형 1.5만개 등 전년 대비 2.5만명 확대

  ②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 대상자: 만 60세 이상 5,000명
  - 사업내용: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행일** 2022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금액/기간 : 최대 45,000원(월) / 최대 12개월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기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 가능, 별도 고시 예정)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월))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1, 2533, 2541)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합니다.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경우,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합니다.

* ('21) 1,200억 → ('22) 1,420억 (+220억)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공공보건의료법 개정, '22.2월 시행)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합니다.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21) 권역 15개소(40억), 지역 35개소(65억) → ('22) 권역 15개소(50억), 지역 43개소(103억)

▣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 ①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②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③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④ 정신건강 관리·재활 치료 협력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 ('21) 13개 시도(20억) → ('22) 15개 시도(23억)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감염병 대응 및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 ,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등 발표

•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감염병대응 및 중증응급, 정책의료 등을 충분히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확충
-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
  -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역시·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지원·기술지원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내 건강 및 보건의료 격차 감소 유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상병수당TF (☎ 044-202-2748)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OECD 38개국은 이미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주요내용**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 예정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1,8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추후 변동 가능
- **시행일** 2022년 7월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명 운영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를 '21년도 추경 확대된 인원을 유지하여 6.6만명까지 제공합니다.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참여인원은 8천명 증가하게 됩니다.

▣ 참여자에 대한 급여는 전년 대비 3% 인상합니다.

▣ 또한, 제주광역자활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제주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첨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 인상

- **추진배경** '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일자리) 참여자 8천명 추가확대(+956억 원)
  - (급여인상) 유형별 일 30,120~58,660원(전년대비 3% 인상)
  - (광역센터 신설) 제주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 광역 시·도의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1년 기준 17개 시도에 15개소 설치됨(제주, 세종 제외)
- **주요내용** 자활사업 개요
  - (참여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 시 일자리 지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사업단별 다름)
    -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점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 등 참여자의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단에 배치

    * 지자체 및 센터별 현황에 따라 참여가능 사업단은 다름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지역별 자활근로 정원 등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7)

탈수급·탈빈곤 지원 및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이 기존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자 및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통장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22년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이후부터 복지로 및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통장 소개〉

구 분		개편 후 통장			
		희망저축 Ⅰ	희망저축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시행일		'22. 4월	'22. 4월	'22. 7월	'22. 7월
근로 여부	일반시장	○	○	○	○
	자활근로	○	○	○	○
연령 요건		제한없음	제한없음	만15~39세	만19~34세
가입 대상	생계	○	×	○	×
	의료	○	×	○	×
	주거·교육	×	○	○	×
	차상위	×	○	○	×
본인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3년후 수급 요건	교육	×	○	○	○
	사례관리	×	○	×	×
	국가자격증	×	×	×	×
	탈수급	○	×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6)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아동(후원자) 저축액에 대한 정부 분담(매칭)비율과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17세)
*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
* (사용방법)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022년부터 정부 분담(매칭)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보도자료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액 확대

- **추진배경**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주요내용**
  - 지원금액 확대
    - (현행) (아동:정부)매칭비율 1:1, 지원한도 월 5만원
    - (변경) (아동:정부)매칭비율 1:2, 지원한도 월 10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21.8월부터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22년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8,035명에서 1,947명 늘어난 9,982명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단, 이미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21.8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겪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주요내용 • 대상자 확대 – (현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 8,035명 – (변경)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9,982명 • 지급기간 확대 – (현행) 최대 36개월 지급 → (변경) 최대 60개월 지급 • 시행일 2021년 8월 1일

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합니다.

▣ 현재는 일부 시도(8개)에서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22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게 됩니다.

▣ 시도별 개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및 자립정보 제공, 개별 욕구를 반영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거·취업·생활·건강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보호종료 5년 이내 약 1,500명)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보도자료〉"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추진배경 지역 간 자립지원 편차 해소 및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단계적 개소 및 '22년 내 17개 시도로 확대 – (현행) 8개 시도 운영 → ('22년~) 17개 시도 운영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자립지원 전문가 배치('22년 120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2년 내 17개소 전체 운영 * 시도별 일정에 따라 연내 단계적 개소 예정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통합돌봄연계TF (☎ 044-202-3281)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월 발표)의 단계적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공모를 거쳐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은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경로 마련과 장애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지원모형 개발을 목표로 3년간 진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 **주요내용**
  -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총 200명의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총 3년(2022~2024)간 실시
  - 지역별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조성 및 자립지원인력 배치
  -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립 시 주거, 돌봄, 건강, 권익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연계
- **시행일**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0)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 9천명→10만 7천명)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25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되고 지원대상도 1천명 늘어납니다.(9천명 → 1만명)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 → 840시간)하고, '22년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됩니다.

* ('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100% 지원,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지원 불가 → ('22년)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9.9만명 → 10.7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등의 활동지원사 매칭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
    * 대상자(3천명 → 4천명)확대, 시간당 단가(1,500원 → 2,0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0.9만명 → 1만명) 및 지원시간 확대(100시간 →125시간)
  -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 및 대상자 확대(4천명 → 8천명)
- **시행일**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2)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등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 **추진배경**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중심 공정한 부과 필요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 **주요내용**
  -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가입자 하한)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1)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인증 기업에는 기업 건강 친화 컨설팅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언론 보도 지원·채용사이트 연계 등을 통한 기업 홍보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또한, 정부는 건강 친화 우수기업의 건강 친화 경영성과를 치하하고, 건강친화 포럼·성과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강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시행

- **추진배경** 지난 10년 간 성인 남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인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직장 내 건강위험 요인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주요내용**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지원대상) 법인 등록된 모든 기업
  - (제출서류)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실적, 건강 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등
  - (유효기간) 3년(추가 연장 가능)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22년도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영유아 차수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 확대 대상은 '22.1.1. 이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추진배경**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 연계로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1)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 국민 정신건강 회복지원이 강화됩니다.

▣ 전 국민 대상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되며, 추가 확충됩니다.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개('19.) → 7개('20.)→ 12개('21.) → 17개 시도('22.)

* 지자체 마음안심버스 : 27대 확충('21. 하)→27대 본격 운영, 18대 추가 확충('22. 하)

▣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60→271개소, +1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60개소, +10개소)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증원*(360명)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3,260→3,560명, +300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180→240명, +60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 강조
- **주요내용**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대상자 맞춤형으로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마음안심버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서 상담, 심리지원 등 서비스 수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260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 문제 예방, 상담, 치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 시군구에 50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알코올·마약 등 중독 예방, 상담, 치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 **시행일**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신체질환·외상 동반 시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처치가 곤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2년 권역정신응급센터 8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 '25년까지 14개소 지정 목표(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1.1.14. 발표))

▣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간 협진을 통하여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대응 병상을 운영하는 등 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및 자해 등의 외상 동반 정신질환자 응급처치가 불가하여 치료 병상 확보 필요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 지정·운영

- **추진배경**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1.1.14. 발표) 중 핵심과제 2-2.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정신 응급상황 상시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22년 8개소→'25년 14개소)
    - 지역 기반으로 정신응급상황에 적기 대응하고 부족한 정신질환자 전담 응급병상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24시간 대기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자 분류 및 치료·입원 조치 가능
- **시행일** 2022년 1분기(예정)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2, 3895)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 강화와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상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인력 증원('21. 57명 → '22. 80명) 및 자살예방상담팀(기존 위기대응상담팀) 분리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상담 전담대응으로 전문적·체계적인 자살예방상담을 제공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을 확대합니다.

* ('21년) 77개소 → ('22년) 104개소

** ('21년) 3개 시도 → ('22년) 9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세종, 제주)

▣ 또한, 지자체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사업비 지원('21년 240개소 → '22년 260개소)과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21년 16개소 → '22년 17개소)을 확대합니다.

자살예방 체계 확대 및 강화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살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와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 (+6개 시·도) 강화
  - 자살예방상담팀(1393) 상담인력 증원(+23명) 및 분리 운영 (위기대응상담팀 → 자살예방상담팀)
  - 자살예방사업비 지원대상(+20개소) 및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대상(+1개소)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3, 3896)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내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우울증·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의사는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활용해 치료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과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치료연계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2년) 동안 본인 부담 면제(보험자 부담률 100%)로 추진됩니다.

*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대응 필요
- **주요내용**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 연계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044-202-2635~6)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외출 자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인해 헌혈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주요 헌혈층인 10대·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혈액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2년 ~ '25년(4개년), 총 140억원

▣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지원하며,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 통계연구와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혈액부족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필요
- **지원대상** 산·학·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지원내용**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지원, ▲전향적 코호트 연구,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
- **지원규모** 총 140억원 / 국비 100%(출연금)
- **시행일** 2022년 7월 시행 예정

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869)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및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2년 ~ '26년, 총 498억원

▣ 박사과정 후에 기초·융합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진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핵심연구 인력을 국내 기술이 없는 공백영역에 해외 연수 지원하여 활용가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 또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연구소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medi융합 인재 양성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 및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career path)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특화 융합인재 양성
- **주요내용**
  -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기초융합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임상의의 연구기반 마련
    - (신진의사과학자 디딤돌지원)신규 16개 과제, 연간 1억 이내 지원
    - (신진의사과학자 심화지원)신규12개 과제, 연간 2억 이내지원
  -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 육성: 핵심연구 인력 해외연수 지원 신규 47개 과제, 연간 1억 이내 지원
  - 국내외 기업-연구소간 공동연구: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지원 2개 과제, 연간 6억 5천이내 지원
- **시행일** 2022년~2026년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872)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 및 국내 백신 개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백신 개발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 ('22년 신규 R&D 사업) 신변종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172억),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56억),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47억), 백신기반기술개발(65억)

▣ 감염병 위기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범용·다가 백신 등 다양한 백신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하고 국산 백신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국내 백신 개발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을 위해 치료용 백신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과 면역증강제 등 기반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 신규 R&D사업 개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 (mRNA 백신)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개발 비임상-임상지원
      * 복지부-질병청 협업 사업('22년 172억)
    -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신속제작 백신 플랫폼, 변이 대응 및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백신 개발
    - (고부가가치 백신) 암, 면역질환 등 치료용 백신, 고위험군 및 성인 대상 백신,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 등 개발
    - (백신기반기술) 면역증강제, 편의·효과적 접종기술, 백신 부작용예측 기술 등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이내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044-202-2899)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생의료 분야 생체소재 개발 및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재생의료분야 인력교육, GMP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

- 추진배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 주요내용
  -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에 맞춘 평가 플랫폼 확립 지원
  -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재생, 성형, 재건 등 재생의료 분야 활용가능한 인체이식 적합 복합바이오소재 및 바이오프린팅을 위한 세포배양 소재 개발
  -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IRB설치·운영이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의료 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의료 공용 IRB 위탁 지원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인력에 대해 법정 필수교육과 실습교육 제공
  -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기설치된 의료기관 내 세포치료제 관련 GMP 시설을 중소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시설로 활용 지원
- 시행일: ('22년 상반기 예정)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22년 하반기 예정)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 044-202-1683)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생산을 위해 국내 백신 개발·생산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백신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부자재의 자급화가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원부자재의 성능평가 시험 등을 지원하여 백신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산업현황, 공급망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 전세계 백신·바이오의약품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을 추진합니다.

▣ 국내 기업간의 역량 공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백신기업 컨소시엄(협의체), 국제 백신 컨퍼런스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추진배경: 국내 백신 원부자재의 산업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
    * (사업내용)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성능시험 비용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신청공고) 22년 1분기
  - 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4억)
  -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61억)
  - 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3억)
- 시행일: 2022년 2월 이후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예요, 홍보리플릿)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 추진배경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 80%	→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 (첫번째)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3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추진배경**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19)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내용

-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 '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개요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6)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유형		지원내용		지원요건			
				연령	재산	소득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15~69세 (청년은 18~34세)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무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무관

▣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주요내용: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3)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

- **추진배경**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주요내용**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①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②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

-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 현행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22~'23년) 3.6% → ('24년~) 3.8%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단위: 만원)

구 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비 고
경증남성	180 (30만원X6)	360 (30만원X12)	월임금의 60%와 단가(월 30만원~80만원) 중 낮은 금액 지급
경증여성	270 (45만원X6)	540 (45만원X12)	
중증남성	360 (60만원X6)	720 (60만원X12)	
중증여성	480 (80만원X6)	960 (80만원X12)	

- (지원절차)

장애인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참고 추후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예정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추진배경**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제도 도입,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 인상됩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 행	개 정('22년)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600,000원	1,200,000원	**1,380,000원**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550,000원	1,050,000원	**1,210,000원**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400,000원	750,000원	**860,000원**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300,000원	450,000원	**520,000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인당 월 지원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인상(15%)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참고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 및 요건 등은 '22.1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 예정인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주요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중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137)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22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실시."

K-Digital Training의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추진배경**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 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주요내용** K-Digital Training 내,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 추진
- **시행일**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309)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통합검색〉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제22조제1항제1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 **추진배경**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시간' 요건 (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합니다.

▣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추진배경**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준비를 위한 경력진단 및 설계 필요
  - 대기업의 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이 의무화('20.5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사각지대 존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2년 5,000명)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多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 *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 시행됩니다.

▣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 (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 **추진배경**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분야)
    -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대상(6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 (지원한도) 위험기계교체(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개선(최대 1억원)
- **시행일** 2022년 1월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진출이 가능합니다.

* ('19년) 50개 → ('21년) 59개 → ('22년) 70개

▣ 그동안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했으나, 미래유망직종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3D·바이오·빅데이터 등) 과정 확대를 통해, 보다 괜찮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 중 ①진입장벽이 높은 직종, ②취업률 70% 이상 전망되는 미래유망 직종, ③지역 노동시장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 대상 6개월 이상 장기훈련 과정*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3D 모션그래픽 디자인, S/W 개발,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빅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Java 개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여성 IT인재 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편 필요
- **주요내용** 미래유망직종 고숙련·고부가 직업훈련과정(AI·3D·바이오·빅데이터 등)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시행일** 2022년 1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 2022년에는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4/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보도자료(예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추진배경**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만 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 **시행일** 2022년 4/4분기 중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21)

2022년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21. 7. 27. 제정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량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통합 위해성평가 대상은 소비자가 위해성 평가를 요청하거나 외국에서 생산·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 소비자단체나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해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통지

▣ 통합 위해성평가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종합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보도자료〉"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강화"

유해물질 총량 관리 전면 시행	• 추진배경: 다양한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위해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 주요내용: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종합적으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043-719-3220)

도매시장의 경매·유통 前 수산물 신속 검사로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소진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 회수·폐기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검사소에서 신속검사로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합니다.

▣ 또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은 항생제 검사를 강화하여 항생제 내성(수퍼박테리아)에 대비합니다.

* 양식수산물 생산량: ('18) 2,249천톤 → ('19) 2,372천톤(5.5% 증가)

** 수산동물용 의약품 판매량: ('09) 178 → ('16) 236 → ('18) 242 → ('19) 266톤

▣ 방사능 오염수에 농축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등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 ①생산단계 검사, ②도매시장 유통 前 검사, ③유통단계 검사로 3중의 촘촘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 추진배경: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소진시간이 짧고, 유통경로도 복잡하여 유통 부적합품의 회수·폐기 등이 어려워 유통前 길목 관리 필요 • 주요내용: 유통 前 길목인 주요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검사가 가능한 24시간 검사체계 구축 ⇒ ① 유통 양식수산물의 85%에 대한 항생제 검사 ② 방사능 오염수에 농축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방사능 검사 ③ 부적합 시 유통 前 사전 차단 및 신속한 회수·폐기 가능 • 시행일: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운영(22년 1월~)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 043-719-2210)

2022년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17. 2.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식약처는 최초 수입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입식품 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 정밀 및 무작위표본검사는 서류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실험실 검사로 식약처는 2017년 2월 22일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입식품 등은 2022년 2월 22일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 시행으로 매년 1만 7천여건의 정밀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됩니다.

※ '20년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2%, 전체 실험실 검사 건수의 13%

▣ 정기 정밀검사 시행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4호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 추진배경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 실시
•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 043-719-2761)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의 국내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생산 규모의 예시모델이 개발·보급됩니다.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최종제품의 시험에 의존하던 품질관리를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 위험을 예측·개선하는 의약품 개발·품질관리 방식으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장벽으로 활용 추세

▣ QbD 실생산 규모 예시모델은 제약 업체가 실제 상업 규모의 의약품 생산 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입니다.

▣ 기존에는 그간 연구소 단계에서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Lab), 시생산(Pilot) 규모의 QbD 예시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해왔으나, 2022년부터 현장과 연계하여 실제 생산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실생산(Commercial) 규모의 예시모델 개발을 통해 QbD의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QbD) 도입 확산	
• 추진배경	제약 현장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도입 지원을 위해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보급
• 주요내용	•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제 생산 규모의 QbD 예시모델 개발·보급 – 알약 형태의 고형제 제형에 대한 QbD 예시모델 개발
• 시행일	QbD 예시모델 개발(~'22.12) 및 대국민 공개(~'23.4)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043-719-2891)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된 약국으로 반납하면, 안전한 절차를 통해 폐기하게 됩니다.

-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 **추진배경**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등 우려로 거점 약국을 통한 수거·폐기 추진
- **주요내용** 서울지역 마약류 취급약국 대상 시범사업 실시

【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 】

마약취급약국 (거점약국)	▶	마약취급약국 거래 도매업체	▶	의료 폐기물 폐기업체
수거, 보관		운반, 보관(30일 이내)		소각·폐기(즉시)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예정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 043-719-4801)

2021년 12월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아열대성 생약 및 대체 생약 등의 기준·규격 연구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생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자생 생약자원의 확보·보존, 표준화 등 국가생약자원 총괄관리, 수입 대체약재 개발 등을 통해 생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식의약품 업계에서는 자생생약자원, 수입 대체약재 등으로 광범위한 개발이 가능하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시관 상시 운영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생약 관련 종사자에게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일반인들은 다양한 한약재를 보고, 만지며 국가에서 수행하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체계를 직접 체험하여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경험하고 한약(생약)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생약 관련 종사자들은 한약(생약)의 정품과 위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 양성과 고품질의 한약(생약)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주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 준공·운영

- **추진배경** 천연물 관련 세계 시장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 한약(생약) 오남용 사건 등 생약자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총괄관리, 전시·교육이 필요
- **주요내용**
  - 아열대성 한약(생약) 및 새로운 품종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 품질관리 연구
  - 아열대성 생약자원 등의 개발·보존 등 국가총괄관리, 나고야의정서 대응 연구
  - 전시동 상설 운영을 통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20)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추가 수당 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추진배경** 정부-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
- **주요내용** '22년 감염관리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 **시행일** 2022년 1월(예정)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74)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이 4개 시·도 17개 시·군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실시됩니다.

▣ 2021년에는 경상남도 10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 및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민물고기 생식에 따른 기생충감염 위험을 교육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 기생충감염병 다발생 지역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 및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2022년도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운영됩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관리〉기생충감염병관리

2022년도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 **추진배경** 우리나라 기생충감염병(간흡충증, 장흡충증 등) 유행지역 주민들(이장단, 요식업협회, 농어업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홍보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여, 식습관 개선 및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4개 시·도 17개 시·군 ※사업 수요조사('21.9.) 후 참여지역 선정
  - (내용)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 (방법) 대면/비대면 교육(마을회관, 학교 등), 현수막, 배너, 리플릿, 지역(마을)방송, 반상회, 게시판 등
- **시행일** 2022년 3월 예정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국내 도입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313)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신생아·영유아의 예방적 결핵 치료를 위해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가 도입됩니다.

▣ 그동안 국내에는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가 없어 성인 알약을 분절·조제하여 정확한 용량 조절과 복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시럽제는 신생아·영유아의 체중(kg)당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과일 맛으로 복용이 쉬워 예방 치료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도입 후 시럽제는 전국 보건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형) 도입

- **추진배경** 국내 소아용 항결핵제 부재로, 신생아·영유아의 예방적 치료* 효과 및 복약 순응도 제고를 위한 소아용 치료제 도입 필요
  *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확정 검사 전까지 예방적 치료를 3개월간 시행
- **주요내용**
  - (현황) 성인 알약을 사용, 정확한 용량 조절과 투약 어려움
    - 영유아는 결핵균 감염 시 결핵으로의 이환율(영유아 50%, 성인 5~10%)과 결핵성 수막염 등 중증 결핵 발생 확률이 높음
    - 현재 성인용 알약을 분절·조제하는 형태로 용량 조절이 어렵고, 맛도 써 복용이 쉽지 않아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주요내용)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국내 도입, 약 600명분
  - (대상) 신생아·영유아(24개월 미만)의 예방적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 043-719-7811)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구축합니다.

* (기존) 4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변경) 5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수도권)

▣ 권역내 중증감염병환자 및 분만·투석·수술을 위한 감염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음압중환자실(6실), 음압병실(30실), 음압수술실(2실)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염병병동을 공모하여 선정·지원합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설치

- **추진배경**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여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규모) 36개 음압병실(일반 30개실, 중환자 6개실), 음압수술실 2개실, 외래관찰병실 2개실 등 독립적인 감염병동 지원
  - (주요역할)
    - (진료·검사)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 **시행일** 2022년 1월(공모)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84)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합니다.

▣ 기존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접종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만 13~17세 여성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도자료 통해 발표 예정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기존 만 12세만 지원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
-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현행: 만 12세 여성청소년
  - 개정: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행일** 2022년 3월 중(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도자료 통해 발표 예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1)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합니다.

▣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 **추진배경**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
- **주요내용**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086개→1,123개(39개 추가, 2개 진단명* 통합)
    * 기존 희귀질환을 신규 희귀질환(상위개념)으로 통합
  - 신규지정 희귀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시행일** 2022년 1분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의 차별적 요소가 개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산정 시 성별·결혼 여부를 반영하였던 지침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모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환자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산정합니다.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경우, 자녀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산정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정보·알림>고시·지침>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추진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을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 해소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주간 건강과 질병(PHWR)」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 043-219-2950)

코로나19, K방역 등 공중보건 대응 경험 및 국가 통계 등에 대한 국문 학술지 발행을 국·영문으로 동시 발행하여, 국제 정보의 교류(환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양질의 정보에 대한 공유 확산을 위해 별도의 「주간 건강과 질병(PHWR)」전용 누리집을 구축하여, 국내·외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국·영문 동시 발행 및 별도의 누리집 구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질병관리청 공용누리집(http://www.kdca.go.kr/)내 「주간 건강과 질병(PHWR)」 국문 정보제공은 2022.6.30.까지 한시 운영

주간 건강과 질병 (PHWR)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 추진배경 K방역 등 공중보건 대응경험과 역학조사 분석연구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공중보건 이슈, 정책 추진 등 국·영문 동시 발행 • 근거 중심의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동료심사제 적용 •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용 누리집 구축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73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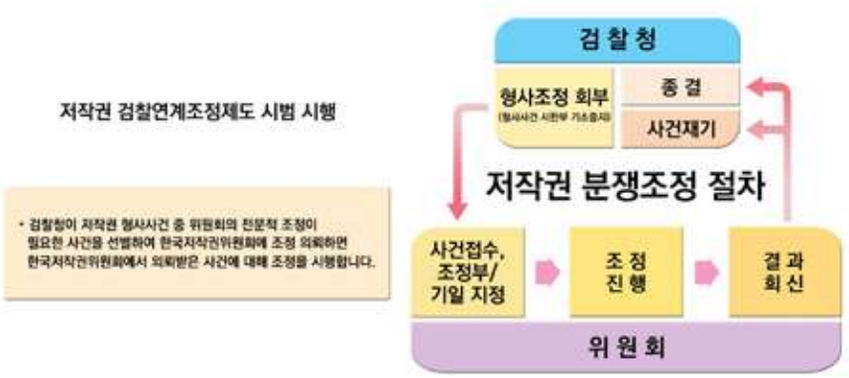

2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74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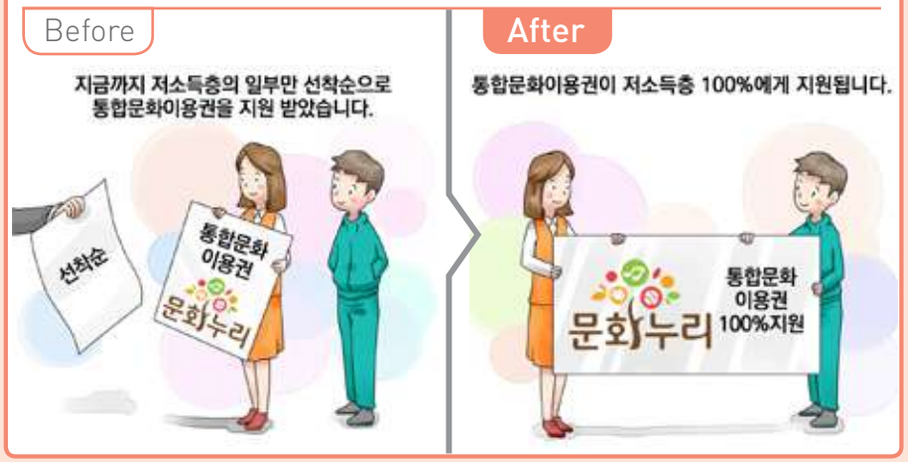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4)

2021년 12월 1일부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합니다.

▣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

검 찰 청		위 원 회				검 찰 청
형사조정 회부 (형사사건 시한부 기소중지)	▶	사건접수, 조정부/ 기일 지정	▶	조정 진행	▶	종결 / 사건재기
				결과 회신		

▣ 동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에서 우선 시범 시행되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하여 2023년부터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 제도 시범 시행

- **추진배경**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계속 증가하나 이해 비해 기소율은 매우 낮아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 조정제도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검찰청이 조정이 필요한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 전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 시행, 조정 성립 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시행기관 : 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 ※ '23년 전면 시행 예정
-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6)

2022년에는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21년) 1인당 연간 10만원, 197만명 → ('22년) 1인당 연간 10만원, 263만명

▣ 특히 2022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 **주요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시행일** '22년 2월 3일~'22년 11월 30일 / 발급일~'22년 12월 31일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12)

기존 유형화된 문화기반시설에서 탈피하여, ❶창업·창직, ❷교류·교육, ❸창·제작, ❹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복합공간이 조성됩니다.

▣ "아트컬처랩"은 예술의 특정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장르 간, 최신 기술 등 타 분야와 이종결합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외 예술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예술 현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문화뉴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트컬처랩 조성

- **주요내용**

구분	주요기능	공간구성
❶창업·창직	비즈센터	전문가 상담·컨설팅 (경영일반·투융자·법률 등)
	예술기업 입주 공간	7~12평형(5인 내외 규모), 15~20평형(10인 내외 규모) 입주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등
❷교류·교육	교육 공간	예비·현업 종사자 대상 전문역량 교육 (가변형 강의실 2~5인, 10인, 20인, 50인 규모별)
	네트워킹·교류 공간	가변형 행사공간, 팝업스토어
❸창·제작	창·제작 스튜디오	영상음향 스튜디오, 자료실, 워크룸 등
❹유통·매개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연·유통	블랙박스형 행사 공간 (시제품 고객검증, IR행사 등)

- 기본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 및 계약 준비 : ~'22.1월
- 리모델링 설계 : ~'22.7월
-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 : '22년 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8)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21.9.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 또한,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 • 주요내용 •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의무 부여 •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서 다른 예술인이나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부여 •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와 신고사건 조사, 구제 조치 등 법적 보호 절차를 규정 • 시행일 2022년 9월 25일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21)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21년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1년 지원규모인 500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관광사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가 시행하고, 최대 1%의 이자 감면을 지원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절실한 금융지원 강화해 관광업계 부담 낮추고, 안전한 여행 기반 확대해 관광 수요 늘린다"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 추진배경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관광기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21년 5,940억원 → '22년 6,490억원)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 확대('21년 500억원 → '22년 1,000억원) • '22년 도래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22년 최대 1% 이자 감면 • 시행일 2021년 12월 24일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042-481-486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기존 집합교육 외에도 이러닝교육, 자율교육의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러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 및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써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 **추진배경** 집합교육으로 제한적인 현행 교육 방법을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등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
-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이수대상을 넓히고 교육시간을 세분화하며,
  -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기존, 원격교육신설, 자율교육신설으로 세분화함
- **시행일** 2021년 11월 30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82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8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3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94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시행일 : 2022년 4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7)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 **추진배경** 일반국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개인의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무공해차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친환경 활동 1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에 의해 일정 실적 달성 시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 044-201-6978)

2022년 3월 25일,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이 시행됩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시행됩니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일 : 기후변화영향평가('22.9.25.), 기후대응기금('22.1.1.)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관련 보도자료('21.8.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85)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22.1.1.)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입니다.

▣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환경기술산업법 시행 개정 보도자료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 추진배경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 확대 • 주요내용 •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자산총액 2조원) 추가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044-201-6671)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사용이 의무화됩니다.('21. 8. 17. 「환경분야 시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신설)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있었으나, 시행 후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포함, 종과 관계없이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측정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의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 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출 및 정보입력 그 외 사업장은 정보입력 후 시스템 사용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www.ecolab.or.kr) 의무사용 시행	• 추진배경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신뢰성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내용 •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부 환경교육팀 (☎ 044-201-6536)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됩니다.

- ▣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교육사(舊,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자격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입니다.
- ▣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사 제도 전면 개편	• **추진배경**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자격요건·교육과정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자격제도 위상 및 전문성 제고 • **시행일** 2022년 1월 6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06)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계획 의무제 도입	• **추진배경**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주요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2)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 및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우선 시행('20.12월)

▣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문전배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거점배출)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

※ (배출방법)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20.6)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추진배경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6),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 주요내용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21.12월)으로 자원순환 사회 구축 •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32병 소요 • 시행일 2021년 12월 25일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신설·적용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1)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별도표기 적용에 따라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 추진배경 실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어 국민혼란 및 재활용 효율성 저해(재활용공정에서 폐기물처리) • 주요내용 •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표기(도포·첩합마크,) 표시 – 몸체에 다른재질이 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044-210-7621)

기존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에서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댐 관리' 중심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 이를 통해, 노후화된 댐 시설의 성능개선, 장수명화 및 수자원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현과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른 1차년도 댐관리기본계획은 2022.12월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 정책을 관리 위주로 전환

- **추진배경** 국가 주도의 댐 건설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 대부분의 기반이 마련된 반면, 노후화된 댐이 많아 댐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 **주요내용**
  -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신설
    - 「댐건설법」제3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
  -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044-210-762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공용수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확대(20%→22%)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별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

▣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을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댐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

- **추진배경** 지원금 확대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에 무공해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탄소중립형 사회로의 이행 촉진
- **주요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비율 상향
    - 생활·공업용수 출연금 출연비율 확대(20% → 22%, 2%p 상향)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상향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함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 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 '21.7.6.)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납 기준 강화(600 →90ppm)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기준 신설(총합 0.1% 이하)

▣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추진배경** 어린이활동공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거나(납*)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프탈레이트류) 어린이건강 영향 우려

* 현행 국내 600ppm, 미국·일본 90ppm, 유럽 사용불가

• **주요내용**
- (개정내용) 주요 선진국(미국, EU 등) 및 국내 유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등) 어린이 안전규제 수준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구분	현재 규정(As-Is)	강화 규정(To-Be)
납	600 ㎎/㎏ (0.06 %)	90 ㎎/㎏ (0.009 %)
프탈레이트류 (DINP 등 7종)	-	0.1 %

- (예외)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예정

• **시행일** 2022년 4월 7일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8)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민원(22종)은 접수·검토·결재·발급 등의 처리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인허가증, 인허가내역, 운반계획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18일부터 적용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참고 환경부유역·지방 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 "화관법 민원24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화관법제48조의2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신설

• **추진배경** 현행법은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속·정확한 비대면 업무처리 및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민원의 신청·접수·결재·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하여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의 연계 가능
-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02-2181-0763)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게 발표됩니다.

구분		지진속보			지진조기경보
지진 규모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통보시간 (최초관측 후)	기존	**20~40초**			**5~10초**
	개선	20~40초	**5~10초**		

▣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과 같은 수준으로,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최초관측 후 5~10초로 빨라집니다.(기존: 최초관측 후 20~40초)

※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발생지역 근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 **추진배경**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 보다 신속한 정보전달로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최초관측 후 20~40초에서 5~10초 이내로 단축
- **시행일** 2022년 4월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 02-2181-0268)

온열·한랭질환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가 확대됩니다.

▣ 노인 등 취약계층이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TV 자막방송, 지자체 음성송출시스템을 활용한 음성방송 등 현장에서의 호응도가 높은 전달체계를 더욱 확장하고, 배달, 택배업 등 야외작업 중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폭염·한파 영향예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영향예보 API*를 신규 제공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 **추진배경** 온열·한랭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가 폭염·한파 영향예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취약계층) 폭염·한파 영향예보 위험수준과 대응요령을 TV 자막방송 및 지자체 음성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
  - (야외근로자)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과 연계하여 배달, 택배업 종사자 대상 영향예보 신규 제공
- **시행일** 2022년 6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03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시행일 : 2022년 2월 5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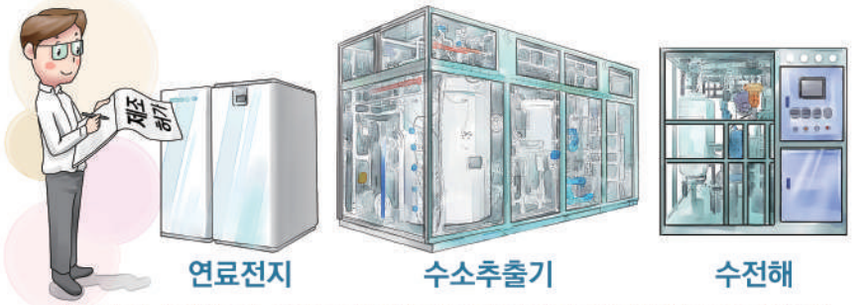

*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04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Before

지금까지 친환경차의 수요 및 이용효율이 낮았습니다.

After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효율도 개선됩니다.

3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1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Before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였습니다.

After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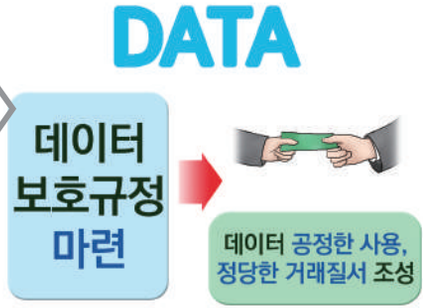

4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212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Before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After

유명인의 초상 ·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 (☎ 044-202-4536)

기초연구사업부터 기초연구지원은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공고됩니다.

- ▣ 대표학회 등 연구현장이 사업규모·포트폴리오를 설계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학문분야별로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를 공고하게 됩니다.
- ▣ 2020년 수학분야, 2021년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로 확대한 이후 2022년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됩니다.
- ▣ 개편된 내용은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21.1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기초연구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알림〉사업공고〉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 과제 공모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추진배경** 학문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고도화
- **주요내용**
  - 전체 기초연구사업 대상으로 10개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별도 공고
    * 분야별 사전 배분된 예산을 기준으로 연구 단가·기간 조정,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 **시행일** 2022년 3월 1일(연구과제 개시 기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044-202-4957)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됩니다.

- ▣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법」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일부 허용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추진배경**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도 변화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대선 종합계획 발표('21.9.6.)
- **주요내용**
  - (기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의 적합성평가를 면제 중으로, 타인에게 판매 시 면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
  - (개선)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 **시행일** 「전파법 시행령」개정 2022년 상반기
  ※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0월 15일부터 선 시행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044-203-6956)

연구개발기관은 서면·전자 연구노트 뿐 아니라 연구노트로 인정할 자료의 형식을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해진 형식의 연구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예 : 회의록, 영상, 음성 등)를 연구노트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추진배경** 연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들을 연구노트의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여 연구노트 작성부담 경감
- **주요내용** 서면·전자로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노트 형식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예정)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5)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세계 최초 수소법' 검색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 실시

- **추진배경**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주요내용**
  - (관련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대상)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제조허가)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함
  - (제조등록)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함
  - (수소용품 검사)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함
  - (벌칙)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항),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법 제59조 제2항 제4호)
- **시행일** 2022년 2월 5일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044-203-4322)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됩니다.

▣ 또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친환경차' 검색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 **추진배경**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법 개정('21.7.27.)
- **주요내용**
  - (수요창출)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 (전기차충전)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
    -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
  -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
-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폐지,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044-203-4246)

2022년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 사용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

▣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제조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추진배경**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
- **주요내용**
  -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재제조 대상을 공동으로 고시하던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제도 폐지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배경)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결정 • (변경) (前)고시 품목(87개)만 재제조로 인정 → (後)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

  -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2)

2022년 2월 18일부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산업위기의 진행단계에 따라 ①위기 前, ②위기 初期, ③위기 中, ④위기 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 그에 상응하여 ①산업위기예방조치, ②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③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④연착륙 지원 등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 **추진배경**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근거를 이 법으로 이전하고 대응 체계, 지원 수단 등 보완
- **주요내용**
  -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위기 前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위기 初期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 (위기 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 (위기 以後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044-203-39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월)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기존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

▣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동 개정내용은 관계법령(송주법 시행령) 후속개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근거 신설

- **추진배경**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주민합의 시 상향할 수 있는 예외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개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가능
  -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합의 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044-203-5384)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1.11.9.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

▣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입니다.

* (정책지원) REC가중치 환원, (금융지원) 장기·저리 융자지원, (수익안정) 한국형 FIT 적용

▣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햇빛두레' 검색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 추진배경: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주요내용: • 마을주민(30인 이상)이 과반수 지분을 투자한 발전사업자(500kW~1MW) 중 10개 시범사업 마을을 선정하여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중 * 12월 31일까지 사업희망자 접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044-203-5263)

'22년 6월 16일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21.6.15.「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 분야 기술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급과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19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 추진배경: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기술인력의 사업수행 실적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주요내용: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하고 경력과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 내용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여성기업 주간" 법적 근거 최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주간"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홍보,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 법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여성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여성기업 주간' 생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20.10.19.)

여성기업주간 신설	
• 추진배경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및 대국민 인식개선
• 주요내용	여성기업주간 지정(매년 7월의 첫째 주)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99)

2022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1.11.11.)

▣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제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되었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졌습니다.

※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

▣ 데이터 보호규정은 데이터산업법과 동일하게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보호규정 시행	
• 추진배경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혁신을 활성화
• 주요내용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민사·행정적 구제수단 마련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99)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1.11.11.)

▣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 추진배경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피해 발생 시 재산적 피해 등 구제 강화
• 주요내용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금지·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766)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736)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22.4.20. 시행)

▣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와 함께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1.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 추진배경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대응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
• 주요내용	• (특허·상표·디자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 (상표·디자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개월로 함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736)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하여 출원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특허법개정 국회통과 보도자료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가능한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들에게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부여
- **주요내용**
  - (분리대상)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분리출원 가능
  - (분리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기간으로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부가기간까지를 의미함
  - (분리 제한사항) 청구범위 유예출원 또는 국어가 아닌 외국어 출원을 통한 분리출원은 금지
    - (타출원으로 파생 금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금지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02-2110-1285)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항목별 편성규제가 완화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방송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한다('21.4.27.)'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추진배경**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추진
- **주요내용**

구분	변경 내용
오락 프로그램	·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DMB는 오락물 '60% 이상' 편성 가능
주된 방송분야	·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DMB는 주된 분야 '60% 이하' 편성 가능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 지역방송(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편성비율 산정기간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

편성규제 항목	현행	개선
오락 프로그램	매월	매반기
주된 방송분야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매분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매반기	연간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7)

2022년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될 예정입니다.(「위치정보법」 개정)

▣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로 우수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던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이와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21.10.12.)'
※ 위치정보법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2.4.20. 시행, '21.10.19. 일부개정)'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추진배경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위치정보법 개정('21.10.19. 공포)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함 •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 절차 및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의무, 위치정보 파기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조치 강화 •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점검(연 1회 이상) 의무화 및 파기실태 점검 근거 마련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 체계 정비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02-2110-1549)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 마련('21.12.1.)

▣ 이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 ▲불법촬영물 등 게재 제한 조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입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보도자료〉방통위,「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마련 보도자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추진배경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추진
	• 주요내용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한차례 연장 가능) 함 •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관 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함 •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함 •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60)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3차원 공간정보 민간디지털 산업에 활용한다. 보도자료

공개제한 공간정보 신산업 발전위해 민간기업 제공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주요내용**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심사(인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후 제공
    - 관리기관은 보안심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력기준, 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 지정기준 고려
- **시행일** 2022년 3월 17일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7)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20.2월)」의 일환으로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 '22.1.1.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정보가 확인되면 先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됩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추진배경**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주요내용** 최근 1년간 과적·적재불량 위반 건을 합산하여 연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8)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22년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해당 서비스는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운영('21.7.~'22.7., 1년) 결과를 분석하여, 수하물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절차를 가다듬고, 고객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확대 운영 공항을 '22.8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한 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공항 짐배송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22.8월, 보도자료 배포 예정)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운영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짐배송서비스를 김해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대상자) 김포·김해·청주공항 등*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도하는 이용객 중 해당 서비스 신청자 * 공항은 이용자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선 출발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 • 시행일 2022년 8월(예정)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50)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GPS 위치오차(17m~37m)를 3m 이내로 보정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세계 7번째로 개발·구축 중인 KASS*는 '23년 4분기에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위치정보가 필요한 타 분야에도 활용 가능토록 공개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카스) : GPS 오차축소(17~37m → 3m이내) 및 안전정보가 강화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위성항법시스템

▣ 이를 통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성항법 표준에 따라 전 국토에 3m 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 시스템(KASS) 사업 추진 중 • 주요내용 • (주요목표) 항공안전 강화, 수용능력 증진 등을 위한 항공용서비스를 주요 목표로 추진 중, 정밀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타 분야 확산도 추진 • (구축규모) 전국 지상시스템(기준국7, 위성통신국2, 중앙처리·통합운영국1) 및 정지궤도 위성 2기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29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Before

종전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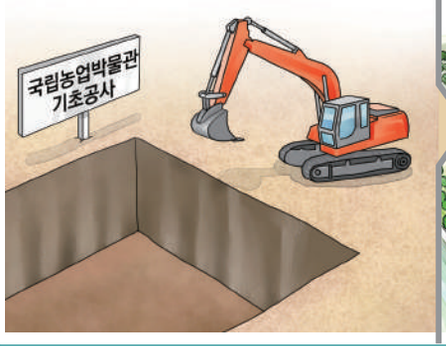

After

농업 · 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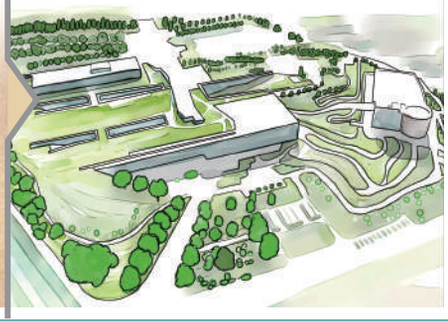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30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시행일 : 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됩니다.

현 행	개 편
• 농지원부 작성 기준	• 농지원부 작성 기준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 준농업법인별	필지별(농지 지번별)
• 농지원부 작성 대상	• 농지원부 작성 대상
1천㎡ 이상의 농지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	면적제한 폐지
•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지원부 관리주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31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시행일 : 2022년 1분기

Before

종전까지 우대상품 없이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 이었습니다.

After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 이상으로 완화 및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3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A군 내 8개 읍면 동일요율 적용

After

A군 내 8개 읍면 개별요율 적용

https://whatsnew.moef.go.kr

5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267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044-201-1545)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요 구성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제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

2022년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추진배경	2022년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주요내용	2022년 하반기에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21.10.14. 개정·공포, '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됩니다.
-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농지원부,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 기준으로 개편 시행	
• 추진배경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 → 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우대상품 도입	
• 추진배경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 65세 → 만 60세) •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 시행일	2022년 1분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개정, '21.11.30. 공포)

※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

▣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 본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은 공정하게, 보험의 혜택은 폭넓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출단위 세분화	• 추진배경 농작물재해보험 적정 보험료율 산출을 위한 산출단위 세분화 실시 • 주요내용 •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산출 • (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 (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22)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예산 : ('21년) 5개 시·군, 25억원 → ('22) 45개 시·군, 315억원(개소당 5년간 140억)

▣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농촌협약(누계) : ('21) 32개 시·군 → ('22) 49개 시·군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 추진배경 체계적·계획적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재생 확산 • 주요내용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기초 인프라 정비와 농촌협약을 통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정부사업 패키지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27)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하반기 예정)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 **주요내용**
  - (거래시스템)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 (정보서비스)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044-201-1530)

사회적 경제활동 우수 직매장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개소당 3억)

▣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현행) 가산점 부여 없음 → (개정) 사회적 경제활동 가점(15점) 부여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 **추진배경**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유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주요내용** 직매장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영세농 비중, 나눔활동, 취약계층 채용,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등)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 부여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5)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합니다.

*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상쇄

▣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은 '22년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시행

-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 (마을발전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하여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지 거래량, 농지가격, 부동산 등기부, 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

**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의 농지취득·소유·이용현황 상시 모니터링, 농지 다수 취득자, 농지거래 급증지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은행관리원 개요

- **추진배경**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하여 농지관리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농지상시관리체계 구축) GIS기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농지 상시 관리·조사
  -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5)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추진배경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심사를 강화 • 주요내용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9)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22년 구축을 시작하여 '22.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주요내용 • (통합정보제공)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복지, 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관계기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제공 • (수준·단계별 맞춤 정보) 통합플랫폼 회원의 활동 이력 관리기능 탑재, 수준별 정보·서비스 추천 • 시행일 2022년 12월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0)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정부양곡 도정 시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관 중 품위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양곡 품질 민원 발생 시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 기관(대한곡물협회) 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해 보관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품위 변질 우려기(5·10월), 위험기(6~9월)에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 창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 시행(지자체, 농관원 등)

정부관리양곡 관리체계 개선

- **추진배경** 정부양곡 품질 제고, 관리 효율성 강화 등 정부관리양곡 품질향상·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보완 필요
- **주요내용**
  - (보관·가공) 적정 규모의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 위주로 운영
  - (운영체계)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재고 등 관리체계 전산화 추진
- **시행일** 2021년 11월 30일부터 과제별 개선 추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2)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3년간('22~'24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벼 재배 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하여 간단관개 기간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전국 벼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벼 생육 및 수량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 **추진배경** 2050 Net-Zero 선언('20.10.28.) 및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7.) 등 탄소중립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메탄 감축 노력 및 수단 발굴 필요
- **주요내용**
  - (목적)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발생량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보급
  - (주요내용)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8개도 단지를 선정하여 논물관리기술 교육·컨설팅 제공, 저탄소 인증 비용 지원,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모델 개발 추진
- **시행일**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산 보급 예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44-201-185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 목적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고내용 : 목적외 사용 사유, 목적외 대상 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 관계주민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와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시행 보도자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추진배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
  -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제31조의2)
    -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의 범위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으로 규정
    - 관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국내산 반려동물 먹거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려동물 의약품,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천연물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추진배경** 양적 팽창 추세인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주요내용**
  - (반려동물먹거리수입대체및국산화)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특수목적의 처방식 사료(첨가제), 보충제 등 제형화·고품질화 등 기술개발 지원
  - (반려동물맞춤형의약품및서비스개발) 질병진단·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7)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 기준이 강화됩니다.

▣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2.6.18. 시행)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추진배경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기준 강화 • 주요내용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교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미용업)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함 •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함 •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3, 2525)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첫 시험 시행은 2022년 2월 27일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동물보건사 제도	•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 2022.2.27.)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 **추진배경**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투입·장기사육 방식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생산비 등 농가 경영부담 증가, 소비자 구매부담 증가 등 문제 발생
- **주요내용**
  - (목적)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등 소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 (주요내용) ①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②축산선진국 소사육방식 조사
    ③탄소배출량 측정조사
    ④송아지 유전능력(육질·육량) 평가시스템 개발
    ⑤단기 출하육 시장현황 분석 및 선호도 조사 등
- **시행일**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2)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주민 민원 급증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 **주요내용**
  -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 '22년 상반기 축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044-201-2276)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하여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하여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신고(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UNI-PASS →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pass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추진배경**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신고 의무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기록 보관 기간 등 신설
  -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의 조사 또는 장부 등의 조사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조사 권한 등 신설
  -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양도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내역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등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제도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물류·운송 공정을 탈피하고, 유통 전주기 자동화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저장·수급 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산지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스마트 유통관리, 물류·유통 자동화

▣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신선농산물 유통·소비 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저장·수급 관리 기술개발 및 첨단 로봇 적용 선별, 이송, 적재 등 물류 全 단계 자동화 구현
- **주요내용**
  - (스마트유통관리) 농식품 지능형 저장·수급, 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유통·소비 전주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연계 체계 구축
  - (물류·유통자동화) 신선 농산물 물류·유통 분야에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APC 물류센터 자동화·스마트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

▣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가축 질병 대응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반복적인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축산업 위기 극복 및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을 통한 가축 방역정책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개발성과현장보급기술)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효능평가 등 검증을 통해 현장보급·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 (국내외신변종바이러스협력체계구축) 국내 토착 질병 및 국내 유입 우려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주요 노지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노지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

▣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국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노동의존도가 높은 노지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융복합 기반의 생산기술 혁신
• 주요내용	• (자율주행농기계핵심부품국산화)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농기계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자율주행화 • (노지농업정밀측정기술국산화) 식량작물, 채소 등 대표품목 6종의 디지털 농업 구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전주기 활용체계 개발 • (농업용로봇현장적용기술개발및실증)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개발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 기술 등 단기 고도화 추진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 동력원을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전기 구동 동력원을 활용한 소형 농작업기계(다목적 관리기, 정식기 등) 기술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전기동력원 적용기술 개발,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농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 동력원 적용을 통한 농기계 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전기동력원적용기술개발)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구동모터, 배터리 등)을 적용하여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지원 • (수소/전기범용플랫폼개발) 대형 농기계(트랙터)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프레임, 차체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 플랫폼 개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8)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되어 추진됩니다.

▣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지원도 신규 도입하여 동 사업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① 지원대상 확대 : 친환경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 자재구입비(ha당 총사업비 기준(국비20, 지방비 30%))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 녹비종자구입비(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② 사업신청 시 친환경 및 일반농가의 비료처방서 제출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도입(10만원 내외)

▣ 동 사업의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1.11.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개정	• 추진배경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인증 농가뿐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요건 추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시·군기술센터 등) 등 제출 • (지원내용 추가)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 예산(국비): '21년 31억원 → '22년 69억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접수기간: 2021년 11월~12월)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3)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21.7.26.)에 따라, 세계유산 갯벌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갯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보전 및 제고를 위해 생물다양성 및 철새 서식지 보전, 생태계 조사·복원 등을 추진하여 갯벌의 고유 기능·가치를 보전하겠습니다.

▣ 통합관리 기본계획 및 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신규제도 발굴, 조직·인력 및 현장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세계유산 인식·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는 한편, 세계유산으로 먼저 등재된 와덴해 갯벌·중국 보하이만 갯벌 등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잰걸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생물다양성 보전 및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26.)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세계유산 등재 기준 ** (1단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 주요내용 유산 갯벌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전 및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유산 갯벌 인식·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27)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1㎢당 비식생 갯벌은 연간 약 198톤, 염생식물은 연간 약 334톤의 탄소 흡수

▣ 기존에 추진 중인 갯벌 복원사업에 더하여, 갯벌 식생 복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갯벌의 블루카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갯벌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신규 4개소를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갯벌 식생 복원사업	• 추진배경 파리협정('16.1.1.)이후, 新기후체제 출범, '2050 탄소중립 선포('20.12.)'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 해양수산의 탈탄소화 정책 전환 및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목적)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 복원 – 온실가스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서식지, 휴게공간 제공 등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 제고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 • (일정) 사업대상지 평가 및 선정 : '21.12월 → 사업 시행 : '22~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3)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30%→50%)하고, 위생기준*을 갖춘 위판장은 위생 위판장으로 선정하여 공표합니다.

*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 처리장

▣ 위생위판장은 정부 비축사업 물량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비축·공급하게 됩니다.

▣ 또한, 시설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에 대하여 위판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되, 위판장 내 풀필먼트 기능을 도입하여, 수산물 신선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수산물 유통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주문받고 산지(위판장)에서 공급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 **추진배경**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환경 구축과 수산물 신선물류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위생 위판장 지정) 위판장 평가를 개선하여 위생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위생위판장을 지정(지자체 주관)
  - (위생위판장 인센티브 마련) 정부 비축물량 배정 시 위생위판장 운영 조합 가점 부여
  -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위판장 시설 개선과 더불어 풀필먼트 모델 도입 (해양수산부 주관 2개소 시범추진)
- **시행일** 2022년 9월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7)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합니다.

▣ 생산자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판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부터 마케팅, 제고 관리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연간 60건)합니다.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신선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해드립니다.

▣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을 기존 중부권역, 호남권역에서 영남권·제주권역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20) 중부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충북) 10개소 → ('21) 호남권역(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10개소 → ('22) 영남권·제주권 10개소

– 로컬푸드 직매장은 공급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신선 포장 시설, HACCP* 가공 시설 등 안전한 생산 기반을 통해 가공한 후 직접 상품을 공급하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추진배경 온라인, 직거래 등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생산자들의 새로운 유통 판로 확보

• 주요내용
-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 (주요 내용) 생산자들의 온라인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구성부터 마케팅, 재고관리 등 전자 상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농축산물 중심의 로컬직매장에 수산부문 입점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One-Stop) 쇼핑 지원
  - 20년 사업자 : (공급자) 보령수협, 서천군수협
    (로컬푸드 매장)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 품앗이마을(5개 지점), 행복한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 21년 사업자 : (공급자)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매장)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 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 22년 사업자 : 영남권역, 제주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 예정 ('22.3월)

• 시행일 2022년 3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51)

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 선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통한 임대 지원과 더불어 어촌에서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고 및 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2021년 12월부터 진행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2022년부터 지원이 이뤄집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선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 추진배경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 지원

• 주요내용
- ('22년 사업규모) 연안어선 10여척 임대 지원(1~2지역)
- (보조율) 어선임대비 50% 지원(자부담 50%)
- (지원조건) 월 최대 250만원(국고 50%분) / 최장 2년(정부안 반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대상자)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
  *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만 49세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2022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기반이 마련됩니다.

▣ 기존에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료·비료 등 일부 용도로만 재활용이 허용되었으며, 처리·보관 시 수산부산물의 특징(계절성, 염분 등) 반영 없이 일괄 규제되었습니다.

▣ 향후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상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제철소 소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처리·보관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 수산부산물은 특정 계절에 다량 발생하고 타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체에 무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주요내용** 수산부산물의 범위,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 의무자, 수산물처리업 허가,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연구 및 산업기반 조성, 통계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62)

‘귀어인의 집’을 1년 이상 빌려드립니다.

▣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로써 최소 1년 이상 제공되며,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귀어인의 집은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과 ‘임대운영’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각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수산정책〉귀어귀촌활성화 사업 지침

귀어인의 집

- **추진배경**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 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 **주요내용**
  - (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 지방비 50%/ 지자체
  - (귀어인의 집 유형)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종류
    - (주택 리모델링)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이동식 주택)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임대운영)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62)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귀어학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로써 경기, 경북, 충북지역에 3개소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운영 및 개설 예정인 귀어학교 7개소*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합니다.

* 충북 귀어학교는 '23년 상반기 개설 후 교육비 지원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각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수산정책〉귀어귀촌활성화 사업 지침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지원

- **추진배경**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70%, 지방비 30~50%/ 지자체
  -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 (귀어학교 개설)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
      * 지정연도(7개소) : ('16)경남 통영 경상대, ('17)충남 보령 수산자원연구소, ('18)전남 강진 해양수산과학원, ('19)강원 강릉 강릉원주대, ('20)경기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1)경북 포항 어업기술센터, ('22) 충북 충주 내수면산업연구소
    - (귀어학교 교육비)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교육비 지원(6개소) : 경남,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및 지속 운영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3)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지속 운영합니다.

▣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수출화물 보관을 위한 장치장(2,500TEU 이상 보관 가능)을 확충('22.2.~) 합니다.

* ('21.12.) 부산항 9,550TEU → ('22.2.~) 12,050TEU 보관장소 운영

▣ 한편,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개장('22.6.~) 하여 부산항의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약 10% 이상) 합니다.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경과

- **추진배경**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에 따른 수출 선복 부족으로 부산항 터미널 내 화물 적체가 장기화되고 수출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수출화주 애로 발생
-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경과 및 계획**

	개장시기	위치	보관용량(면적)
①	7.20.	신항 서컨 배후단지	2,450TEU (7만㎡)
②	8.16.	신항 안골 장치장	600TEU (8천㎡)
③	9.8.	신항 서컨 배후단지	1,400TEU (4만㎡)
④	9.10.	북항 우암부두	1,900TEU (1만㎡)
⑤	11월	신항 웅동 배후단지	1,800TEU(3.3만㎡)
⑥	12월	신항 서컨 배후단지	1,400TEU (4만㎡)
⑦	'22.2월	신항 웅동 배후단지	2,500TEU 이상 (4만㎡)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90)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선용품은 선박 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 수출실적의 인정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보도자료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 추진배경	선용품공급업계의 수출 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 주요내용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 – 수출실적 인정 금액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함 –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로 함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착수 및 보급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8)

내년부터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R&D,'22~'31)" 개발에 착수합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육·해상 실증을 통해 상용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 특히, 산업부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이어받아 사업화를 달성하는 부처 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앞으로 친환경 신기술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 선가의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됩니다.

▣ 그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선사는 친환경선박 건조에 대한 가격 부담 등으로 자발적인 친환경 선박 전환이 어려웠으나, 이번 정부 지원확대를 통해 선주의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경감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안여객선·유람선 등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번 정부 지원확대를 통해 선주 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경감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객선·유람선 등의 친환경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 추진배경	국제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도래 중인 친환경 新시장 선점을 위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무탄소선박(암모니아 등) 기술 개발
• 주요내용	①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② 육상 시험평가 ③ 연안선박 해상 실증 및 ④ 국내외 표준화를 거쳐 최종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술개발
• 시행일	2022년 4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고시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044-200-5920)

변화된 대내·외 항만물류 경제·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4차('22~'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약 33㎢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하반기 고시일부터 적용됩니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고시

- **추진배경** 항만법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여 중장기 항만배후단지 추진방향 마련
- **주요내용**
  - (비전) 탄소중립과 혁신을 선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 (기본방향) 항만배후단지 개발 전주기(계획-조성-입주-운영) 사업체계 개편
  - (추진전략)
    - 최첨단·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 경쟁력을 갖춘 권역별 특화 항만배후단지
    - 지역-시민-기업이 공존하는 상생형 항만배후단지
- **시행일** 2022년 하반기(예정)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1)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21.11.30. 공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19.4.1.부터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영수증, 산림경영기록 등으로 실제 종사한 사실을 증빙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매년 공익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 임업직불금은 2022년 상반기 사업 공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보도자료>임업직불제 통과 보도자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추진배경**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 **주요내용**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73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인상하여 왔습니다.

2017년	
병 장	216,000
상 병	195,000
일 병	176,400
이 병	163,000

2021년	
병 장	608,500
상 병	549,200
일 병	496,900
이 병	459,100

After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병 장	676,100
상 병	610,200
일 병	552,100
이 병	510,100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74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금리 5%에 국가재정으로 1% 추가금리(2021년 10월~)를 지급하였습니다.

After

1월 적금납입금액부터 납입금액의 1/3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3 국가보훈처

자세한 내용은 p.280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대상 연령은 현행 80세 이상이었습니다.

After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대상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 시행합니다.

4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283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시행일 : 2022년 2월

Before

그동안 일부 지방병무청은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After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가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시행됩니다.

5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284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Before

그동안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을 종이로 출력하였습니다.

After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 · 보관 · 제출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하였습니다.

▣ 2017년 병장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됩니다.

▣ 이는,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도 국방예산 확정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주요내용**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구분	봉급액
병장	540,900
상병	488,200
일병	441,700
이병	408,100

→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구분	봉급액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봉급액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장병:1정부)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이행자에게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2022년 1월 적금납입액부터 만기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 청년희망사다리 :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문화생활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3:1매칭 지원

- **추진배경** '한국형 뉴딜 2.0 휴먼뉴딜'의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자산형성 일환
- **주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006만원 (①+② = 10,056,000원)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 (720만 + 28.5만 + 5.7만)
  - ② 3:1 매칭지원금 = 251.4만원 (원리금의 1/3)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7486)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신규 설치합니다.

▣ 일반가정의 비데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데사용에 익숙한 장병들의 입대가 늘어나고 있어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보급되면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관리(필터·노즐 교체, 외관 청소 등)를 통해 청결한 위생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 전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 총 설치물량(15,351대)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물량(대)	15,351	12,084	629	1,389	821	428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 **추진배경** MZ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설치함으로써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전군 병영생활관에 비데 15,351대를 신규 설치(임차)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를 시험 도입합니다.

▣ 2022년에 시행되는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뉩니다.

- 단기는 2021년과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합니다.
- 장기는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합니다.

향후,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전시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주요내용**
  -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도입
  -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 ~ 소·중령)을 대상으로 50명 선발하여 운영
  -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 /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3)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가 추가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주로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되던 소집통지서가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한 송달 서비스도 추가 시행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을 근거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개사업자로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토스, KT 등을 말함

이를 통해, 종이 우편물 때문에 생기던 개인정보 노출과 수령불편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 통지서 발송에 필요했던 연간 약 21억 원의 우편료 예산의 상당부분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 **추진배경** 종이 소집통지서 송달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주로 우편으로 전달되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송달
    - * 네이버앱, 카카오페이, 통신사 문자 등 민간 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순차 발송(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필요)
  - 특정 플랫폼에서 통지서 열람 시 다른 매체는 미발송
  - 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 시, 기존 방식대로 종이 우편물 발송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부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1년에는 47,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추진배경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지원 필요
• 주요내용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000원 → 62,000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673)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가 이관됩니다.

▣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 사망보상금(「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 지급업무가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되, 접수 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합니다.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은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업무를 이관	
• 추진배경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함 호소
• 주요내용	• 기존 지급처였던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지급 및 환수 업무를 이관 • 사망보상금 접수 업무는 기존 국가보훈처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모두 접수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92)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미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2019.7.16.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생전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도자료)"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 **추진배경**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75~79세 분들에 대해서도 생전안장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유족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전심의 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 시행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6)

2021.12.9. 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이 폐지됩니다.
('21.6.8.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은 전역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나 제한 규정인 3년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실시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어 재취업이 절실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기회가 확대됩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 **추진배경**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전역 후 3년의 취업지원 기간 폐지
  - 취업지원 횟수 1회에서 3회로 개정
-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월 25만원, 장기는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22년부터 중기는 월 50만원, 장기는 월 7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취·창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인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 강원,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22년부터 검사횟수를 연 2~3회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검사 가능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추진배경** 병역판정검사 선택권 보장 및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 **주요내용**
  - 연 검사횟수 : 2~3회
    -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청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청
    -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 **시행일** 2022년 2월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합니다.

▣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앞으로는 은행, 통신사 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 **시행일** 2022년 1월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6)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추진배경**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 * (종전)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 (개선)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 **시행일** 2022년 3월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됩니다.

▣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합니다.

▣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확대합니다.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추진배경** 청년들의 창업 및 학업 등 기회 보장
- **연기사유별 주요내용**
  - 창업 :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질병 : 60일 범위 내 연기 → 90일 범위 내 연기
- **시행일** 2022년 1월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65)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추진배경**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국민 편익 제고
- **주요내용**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
- **시행일** 2022년 1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7,000원으로 인상하여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인상
-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시행일** 202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본인 신청)

▣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분할복무 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 **추진배경** 분할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 복무가 가능
- **시행일** 2022년 6월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그동안 원격강좌 수강료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22년도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받게 되어 자기개발 및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강화
-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됨
- **시행일** 2022년 1월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2)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됩니다.

▣ 이를 통해 산업지원인력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에게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무여건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평가점수 상위3% 이내 모범 병역지정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 외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 **시행일** 2022년 1월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7)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추진배경** 병적기록표 발급 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 *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신청만 가능, 발급은 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
    -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 **시행일** 2022년 1월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02-2079-1105)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합니다.

▣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형화·다변화·현지화 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변별력을 강화합니다.

▣ 또한,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내용은 2022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시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추진배경**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방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주요내용**
  - 지원한도 확대
    - 3년간 최대 100억원 → 5년간 최대 200억원
  - 과제 선정 평가 변별력 강화
    - 수출 관련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수출실적 창출 관련 우대·감점 항목 추가
  -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 마련(규격대상, 규격형태 등)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예정)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2)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한해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반기별 반복되는 행정소요와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착수금 사용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확대하여 행정소요를 간소화시키고 업체의 자금운용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한편, 착수금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

- **추진배경**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로 소비·투자비목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방산업체의 자금운용의 유연성·자율성 보장
- **주요내용** 착수금 사용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 (360일 이내의 지출 계획에 대해 착수금 지급)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지체의 책임이 있는 협력업체만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협력업체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던 체계업체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 무기체계 계약금액 : 1,000억원, 협력업체 계약금액 : 100억원
- 지체상금률 : 0.075%(물품의 제조·구매), 납품 지체 1일 발생

구분	체계업체	협력업체	체계업체 실 부담금	국고환수
~ 을	7,50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6,750만원	7,500만원
~으로	75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0원	750만원

* 지체상금 면제에 따라 협력업체 책임분에 대해 부과된 금액

- 협력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체계업체(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고, 체계업체는 국가에 손해 배상
- 개선방안 적용 시 체계업체의 부담은 대폭 완화되는 반면 협력업체는 기존과 동일, 국고환수는 협력업체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축소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계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지체상금 비용은 없음.

▣ 협력업체의 귀책 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개정시행('21.11.2.)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지체상금 제도 개선

- **추진배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시행일** 2021년 11월 2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5)

해외 도입중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 중소기업인 개발업체가 일부를 부담하여 왔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의 경우, 핵심부품 개발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수출연계부품 개발은 체계업체가 직접 수요기업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시험평가 계획을 포함 부품 국산화 개발 계획의 검증 강화를 위해 과제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합니다.

▣ 체계업체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 개발 업체를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상생협력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계업체에 대해서는 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위 제도개선 사항은 2022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 **추진배경**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들의 참여 유도
- **주요내용**
  - (시험평가 비용부담 해소) 중소 부품 개발업체가 체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여 수행되는 체계적합성 시험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
    - 핵심부품국산화 : 전액 정부부담
    -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가 부담
  -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제안요청서 확정 전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제안요청서 예비공고 절차 도입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부품 국산화 개발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제안서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
-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7)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 업체를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선정대상기업에게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통합(Full-Package)지원합니다.

▣ 세부내용은 '22년 상반기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확대와 국방 신산업의 세계 일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국방 신산업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 **주요내용**
  - 대상 : 국방 신산업 5대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신산업분야 기술, 경영 애로사항 등 컨설팅
    - (인력·자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참여 우대, 시설 비용 지원 등
    - (기술개발) 청 R&D 사업 참여 우대 등
    -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절충교역 참여 우대, 사업화 비용 저금리 대출 등
-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9)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설합니다.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기업에게는 기업당 최대 1억원 내에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전 사업화 등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합니다.

▣ 신설되는 사업은 '22년 상반기 사전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지원대상기업을 모집공고 및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방산분야에 진입시키고 신생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 **추진배경**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신생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
- **주요내용**
  - 대상 :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10년 이내)
  - 지원예산/한도 : 2억원('22년) / 기업당 최대 1억원(총 소요비용의 75%)
  -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전담컨설팅·멘토링, 방산 교육
    - 보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술지원
    - 청 R&D/수출 지원사업 참여, 체계기업 파트너쉽, 해외진출 지원
    -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실전 사업화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73)

해외 도입중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유형*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유형을 신설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은 국산화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여 전략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비 기준 500억원 이내의 과제를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2년 상반기 중 과제별 제안요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방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개발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 기술적 도약 및 신 수출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략부품국산화 사업 신설

- **추진배경** "부품국산화"가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방산 부품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필요
- **주요내용** 기술 중요도가 높고 전략적인 부품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최대 5년간 총 과제비 500억원 이내 과제 기준으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1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307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행일 : 2021년 12월 21일

Before

종전에는 전자여권의 보안성 · 내구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After

보안성 ·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됩니다.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09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21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 앞으로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3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13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Before

종전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After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 · 운영 규정이 신설됩니다.

4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15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체계가 없었습니다.

After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320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Before

지금까지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등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였습니다.

After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6 인사혁신처

자세한 내용은 p.321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에 고교 선택과목이 포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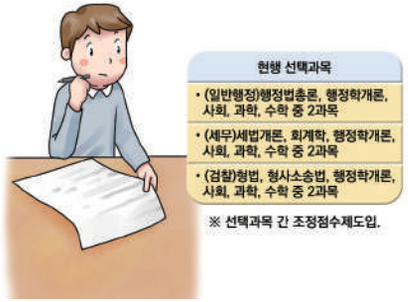

After

직무역량 · 업무적응도 향상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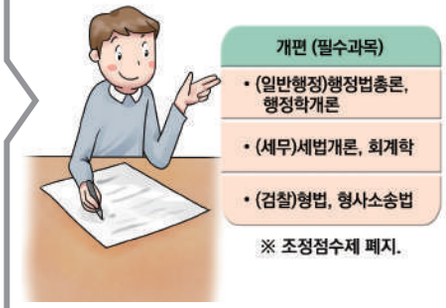

7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327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Before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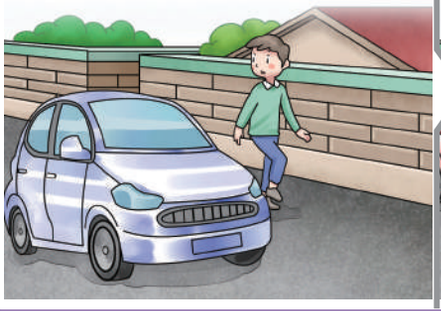

After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 ·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8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32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Before

기존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After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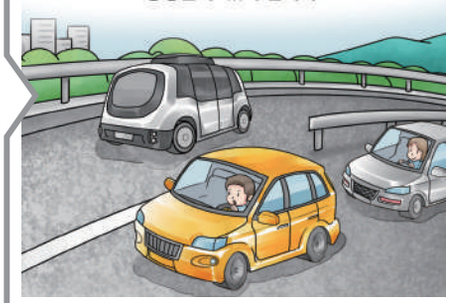

9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35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355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시행일 : 2022년 1월 (예정)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33)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21.12.21.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2022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추진배경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주요내용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개시
	• 시행일	2021년 12월 21일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02-2100-8159/8226)

재외국민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에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5종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사민원24'에 '국민비서 상담서비스(챗봇)'를 도입하여 궁금한 민원사항을 24시간 365일 세계 각지의 우리국민에게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챗봇 서비스는 2021.12월부터 시범운영하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신청과 재외공관정보를 안내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영사민원24'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법무부 보호관찰과 (☎ 02-2110-3789)

2022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됩니다.('22.1.21.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신질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로 인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19년 경남 진주의 ○○○사건 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19. 4. 경남 진주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호관찰 종료 후 '치료 중단 → 상태 악화 → 강력범죄'로 이어짐

▣ 앞으로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강화	
• 추진배경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
• 주요내용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
• 시행일	2022년 1월 21일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140)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건강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도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방어하기 위함
• 주요내용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진술조력인을 선정·지원하여, 피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법무부 의료과 (☎ 02-2110-3617)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의무관 및 외부병원 이송 진료(대면진료) 이외에는 향정신성의약품(ADHD 치료제 포함),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에 대해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교부신청을 제한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합니다. 코로나19 등 집단감염 발생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교정청의 신속한 의료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 병원 등에서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소 시 처방전 또는 처방내역서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추진배경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시설 내 반입 차단책 마련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 주요내용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 설명의무 신설 (의무관 진료 시 진료 소견 및 처방에 관해 환자에게 적절히 설명) •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 가족 등의 트라마돌 제제 및 마약성진통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규정 신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법무부 보안과 (☎ 02-2110-3887)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 출석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 2022년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 주요내용 • (신청대상) 현행 법령상 허용 요건 충족 시 △감염병 전파 우려 등 • (신청방법) 영상재판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 •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 • (형사재판) 구속의 이유 등 고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상소권회복 • 시행일 2021년 11월 18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044-205-3338)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자치사무 외 국가 사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초광역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협약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설치 가능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제2조제3항에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주요내용**

• 개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 설치절차

자치단체간 협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규약 승인 〈행안부장관〉 → 특별자치단체 설치

-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자치단체 간 구성 가능
- 구성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 기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 제정
-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필요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 위임 요청 가능
- 규약에 대하여 구성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안부장관 승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044-205-3508)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최초로 지정·고시('21.10.19.)하고,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추진됩니다.

▣ 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계획수립·사업추진·성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는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21.10.19.)하고, '22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추진방향)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
- 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
  * 기존 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기금 투자계획 등
-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를 지원

• (관리방안)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등 제시하고,
- 관련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을 활용하여 계획수립·사업추진·성과분석 등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등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044-205-3349)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도자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제6조)
    ※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①)
  -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제7조 등)
  -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제30조의2)
    ※ 행정안전부-지방의회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광역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근거 추가
  - 지방의회의 신규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제32조 등)
    ※ 시험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집행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제3조 등)
-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044-205-3387)

2022년 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서명요건의 상한을 규정하고,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 **추진배경** '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청구요건 등으로 활용이 저조하여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자 독립된 개별법을 제정
- **주요내용**
  - 청구 요건 완화(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 18세 이상)
  -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1월 13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044-205-3943)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자금 관리의 안정성·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 제7조제1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추진배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안전한 관리 및 가맹점 등록 불편 해소를 위한 신청 완화 근거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운영자금 관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관리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관리
  - (등록신청 완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정보공개) 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 및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6)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적용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뜻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설치·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2년에 1회), 안전점검(매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 미이행 시 벌칙·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벌 칙 –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 보험 미가입(1차 250만원), 안전교육 미이수(1차 150만원), 안전점검미실시(1차 150만원), 안전점검실시대장 미보관(1차 15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는 2024년 6월 23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보험 및 교육, 안전점검 등은 22년 6월 23일부터 적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법」 적용 시행

- **추진배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원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 안전검사(2년에 1회), 보험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안전점검(매월) 등이 의무화됨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예외)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까지 6월 23일까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해야함
- **시행일** 2022년 6월 23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2)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추진배경**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 조성
- **주요내용**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개와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5)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 044-201-8241)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됩니다.

	현행 선택과목		개편(필수과목)
행정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 (검찰)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9급 채용 시 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추진배경**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추진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 제외, 전문 2과목 필수과목으로 개편
  - 선택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05)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 044-201-824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5급 이상 채용시험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추진배경**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까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더하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단,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한 범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응시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044-200-6784)

2022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그간 개별 부처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해왔던 위원회 결정문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합되어 화면 내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데이터 친화적인 형태(openAPI)로 외부에 개방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보도자료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 **추진배경** 공정위, 권익위, 개보위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하여 국민편의와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 **주요내용**
  - 한글파일 형태의 공정위·권익위 의결서, 개보위 결정문을 DB로 구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에서 HTML형태로 모든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XML) 변환하여 openAPI 방식으로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행정문서 활용범위 확대
- **시행일** 2022년 4월 1일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042-724-7494)

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서비스 거래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전용 플랫폼('이음장터')을 구축·운영합니다.

▣ 이음장터는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 간 자유로운 대화·협의를 거쳐 서비스가 거래되는 쌍방향 서비스 거래 전용 플랫폼입니다.

▣ 서비스 수요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음장터에 올리고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며, 서비스 기업은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이음장터'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 관심주제별로 게시판(커뮤니티)을 작성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이음장터는 2022년 1월 중순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 **추진배경** 자유로운 대화·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를 구축·운영하여 서비스 혁신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수요기관은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올리고 견적을 받아볼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기업은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서비스 상품 등록 및 판매 가능
  - 자유로운 대화·협상을 통한 서비스 거래 가능
  -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간 대화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게시판(커뮤니티) 운영
- **시행일** 2022년 1월 중순

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 (☎ 042-724-6302)

군 급식품목(가공식품)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전면 적용하여 군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유통 가공식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군에 공급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다양한 시중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 선택 가능

▣ 조달청이 공급하는 군납 가공식품은 소시지, 생선묵, 김치류 등 150여개 품목으로 연간 3,3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제품별 편차가 적은 3품목(천일염, 옥수수유, 대두유) 및 전투식량을 제외한 전 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용을 위해, 그 동안 적용하던 군전용 규격(구매요구서)를 폐지하고 상용 급식품목에 적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를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시중 대형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을 군이 직접 선택하여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은 2022년 공고하는 군 급식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군 장병 급식 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 **추진배경** 군 급식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장병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행
- **주요내용**
  - 군납 가공식품 조달에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시행
  - 군 전용 식품규격 폐지하고, 상용 식품류에 적용하는 식약처 고시 적용
  -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시중제품을 군에 보급
- **시행일** 2022년 공고하는 군 급식류 계약부터 시행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350)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22.1.1.,시행)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을 개정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

▣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으며,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14개 전문건설업 대업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심사하도록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합니다.

* 다만,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주력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개선

- **추진배경**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심사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원활
  -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공능력에 따른 경쟁구도 분위기 조성
  - 대업종화 개편에 따른 조달청 입찰참가방법 및 심사기준 개정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추진배경**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
- **주요내용**
  -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 집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규정

- **추진배경**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킴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2022년 4월 20일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 집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 **추진배경**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실제 보도에서 사용 중인 기구·장치의 보도통행 허용이 어려움
- **주요내용**
  -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 행안부령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 (행안부령 개정 중)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추진배경**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
- **주요내용**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044-205-7288)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됩니다. (소방직무특성 반영)

▣ 기존 선택과목이 포함된 필기시험과목(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이 '22.1월부터 필수과목(총 5과목)으로만 시행됩니다.

※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과목으로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재입법예고(소방청공고 2019-107호)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변경

현행 (5과목 : 필수3, 선택2)		개선 (필수 5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7)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의 종류가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납니다.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되고,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②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③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 이번 개정내용은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

- **추진배경**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에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추가
  - (적용)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소방안전교육 이수(영업주 및 종업원),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2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빈발하고 있어, 화재사고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에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전기저장시설을 신설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소방청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등 의무설치로 화재안전강화" 보도자료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전기저장시설의 잦은 화재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확대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개선)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지정
  - 전기저장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현행)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없음
    → (개정안)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2월 25일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652)

정부·민간 정보망 연계를 통해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안전, 행정절차 등의 정보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종합포털(https://boat.kcg.go.kr)이 운영됩니다.

▣ 먼저, 간편한 수상레저종합포털 접속*을 통해 각 개인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및 장소, 면허조회, 갱신기간 안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간의 간편 본인인증(디지털원패스, 토스 등) 서비스 도입(1분기 예정)

▣ 이와 함께,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면허갱신 안내문, 행정처분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을 통해 손쉽게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조종면허증을 간편하게 스마트폰(네이버 또는 카카오)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예정)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행정서비스 등 운영

- **추진배경** 우편 안내문의 모바일 전환, 플라스틱 카드 형태 조종면허증의 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과 간편한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편익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
  - (서비스 내용)
    ① 조종면허 갱신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 모바일 안내서를 열람한 사람은 별도 종이 안내문을 보내지 않으며,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종이 안내문을 발송

    ② 실물 조종면허증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③ 쉽게 수상레저종합포털 이용을 위해 간편한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 **시행일**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 본인인증 및 모바일조종면허증(3월 중)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원고)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피고)에게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 범위 및 열람자 지정,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 **추진배경**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지원
- **주요내용**
  -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자를 지정하고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2)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 신고인이 분쟁조정을 거쳤는지, 분쟁조정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 ▣ 분쟁조정제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도 가능하여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건의 분쟁 해결에 보다 적절한 제도입니다.
- ▣ 신고인들에게 분쟁조정 제도를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17.)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추진배경 공정위 사건처리의 명확성과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분쟁조정 진행 여부 및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기재란 신설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2)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 ▣ 신고포상금 지급 시 신고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유인을 높인 것입니다.
- ▣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17.)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추진배경 공정위 사건처리의 명확성과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란 신설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제재 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소액 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사건'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불가능
- **주요내용**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처분: 경고,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건의 대부분은 분쟁가액이 소액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3)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공정위 사건처리를 통해 행정·형사제재나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는 것이 중요
  - 공정위가 침해행위 중단을 시정조치로 부과할 수는 있으나,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소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신속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불공정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직접 해당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5)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 비난가능성(고의성·악의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형의 행위(기업결합 등)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공정거래법의 형벌 규정 정비

-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외형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그 행위효과(경쟁제한의 폐해)까지 따져서 법위반 여부가 결정됨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형법상의 범죄(반인륜적·반사회적 성격)를 단죄하기 위해 고안된 형벌의 부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 **주요내용**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고의성·악의성이 낮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 삭제

〈 형벌 규정 폐지 대상 위반행위 〉
① 기업결합
②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③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④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거래·재판가유지 교사)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4)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공정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회사(취득회사) 기준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피취득회사) 300억원 이상

** 거래금액 기준과 국내시장 활동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 **추진배경** 현행 규모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현행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의무 발생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044-200-4534)

올해부터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됩니다.

- A사업자의 가격인상계획이 경쟁사인 B사에게 알려지는 경우, B사가 A사를 따라 가격을 함께 인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가격담합 없이도 정보교환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경쟁 등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경쟁사 간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실제로 정보가 교환된 결과 가격인상, 점유율 경쟁 소멸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정당화할만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 별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가격이 유사·동일하게 인상되는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경쟁사 간 교환된 경우, 올해부터는 경쟁사 간 경쟁변수와 관련된 담합을 하기로 합의(예 : 가격담합을 하기로 하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에 맞추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1.07.26.)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추진배경** 수급사업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 위반시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규정하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있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1.07.26.)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추진배경** 손해의 입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주로 원사업자에 편재되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
- **주요내용**
  -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044-200-484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상장 계열사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추진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 **주요내용**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044-200-4843)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합니다.

▣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개정법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추진배경** 현행 규정상 적대적 M&A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강화
- **주요내용**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044-200-484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

▣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그 소속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추진배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집단이 규율회피를 위해 사전에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 044-200-4860)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이 강화됩니다.

- ▣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하였습니다.
-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 ▣ 다만, 부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현행)이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추진배경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주요내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인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인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 044-200-4860)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였습니다.
- ▣ 다만, 일반 지주회사는 CVC을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추진배경	기업들의 유동자금이 벤처기업 등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도록 하여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 044-200-4860)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벤처지주회사를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상장 자회사는 20% 유지)하였습니다.

▣ 또한,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 한편, 벤처지주회사가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 **추진배경**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율이 과도하여 벤체지주회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벤처지주회사의 지분보유특례)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적용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20%
    -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 상장·비상장 모두 50%
  -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벤처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 허용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 044-200-4880)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합니다.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는 현행 265개에서 709개('21.5.1.기준)로 증가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일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의 지분매각,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규율을 회피하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 **주요내용**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044-200-7674)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21.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추진배경** 가족채용,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익추구 관행에 따른 국민 불신 해소 및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필요
- **주요내용**
  -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5가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의 제한·금지 의무(5가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900개 기관, 200만명 공직자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4, 7697)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무고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 **추진배경** 현행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음
- **주요내용**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703)

2022년 6월 8일부터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가 추가되고 신고자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가 추가됩니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시 처벌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추진배경** 불공정 사례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시하여 부정청탁 행위 근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추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2)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11월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①정보주체 권리보장, ②유·노출 최소화, ③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 2022년에는 정보주체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대화형 텍스트·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기술 로드맵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 **추진배경**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 **주요내용**
  - ①정보주체 권리보장, ②유·노출 최소화, ③안전한 활용을 위한 4개 과제 추진
    - 정보주체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 **시행일** 2022년 1월 (예정)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53)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2년 3월내 발간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상황별 서비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과 보호자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셰어런팅'의 문제점 등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는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인식은 성인에 비해 부족해, 아동·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사업자편)」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칙(아동·청소년 및 보호자편)」안내
    - 아동·청소년에게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 안내
    -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안내
- **시행일** 2022년 3월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74)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기업·연구자가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 2022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명처리·적정성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현데이터를 활용해 가명정보 활용기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명정보 결합신청자를 위한 사전결합률 확인, 결합하려는 데이터 매칭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연구자 등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 (기술지원) 비대면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지원
  - (자가훈련) 가명·익명처리 사이버 훈련장 및 대용량 재현데이터 구축
  - (결합지원) 가명정보 결합신청자를 위한 사전결합률 확인, 데이터매칭지원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 02-2100-3082)

2022년 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 AI 상담(챗봇)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민원신청 등을 위하여 개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개인정보 상담·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지원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 후, 자동화된 개인정보보호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AI 상담(챗봇) 구축

- **추진배경** 민원신청의 불편함과 증가하는 상담·민원을 위한 대책 필요
  ※개인정보 포털, e-Privacy 클린서비스, 침해신고센터 등 총 7개 사이트 운영 중
  ※ 개인정보 헬프데스크(☎118) : 33명, e-Privacy 클린서비스 상담·지원인력 : 8명
- **주요내용**
  - (분석) 개인정보 웹사이트 분석 및 챗봇과의 연계 방안 설계·구현
  - (연계 1) 개인정보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
  - (연계 2)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식) ❶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❷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신 설)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일 반 / 2 / 8 / 25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30~40 (신 설) 시설투자(%) / 당기분 대 / 당기분 중견 / 당기분 중소 / 증가분 일 반 / 1 / 3 / 10 / 3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좌 동)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일 반 / 2 / 8 / 25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30~40 국가전략기술 / 30~40 / 40~50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 당기분 대 / 당기분 중견 / 당기분 중소 / 증가분 일 반 / 1 / 3 / 10 / 3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국가전략기술 / 6 / 8 / 16 / 4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 / 중소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가입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적용기한) '23.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신 설)	■ (가입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 ■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4.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 제외항목 • 난임시술 • (공제율) 15% – 난임시술 20%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추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공제율) 15% – 난임시술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소득세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조세특례 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❶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❷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❹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차인 요건 • 임차인 요건 합리화 ❶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❷ (좌동) ❸ (좌동) ❹ (좌동)	조세특례 제한법 ('22.1.1.)
	〈추가〉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❶~❹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 • (가산세)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미제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손금(필요경비)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필요경비)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법인세법 소득세법 ('22.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소득세제과 (044-215-42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외 기준금액 상향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 30만원 미만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50만원 미만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부가가치세법 ('22.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기한) '21.12.31.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요건) ❶과 ❷ 모두 충족 ❶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 대체결제수단 ❷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 0.2% 16~60일 지급 / 0.1%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 0.5% 16~30일 지급 / 0.3% 31~60일 지급 / 0.1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 (적용기한) '21.12.31.	■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시 정비·추가 •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년 적용 • (적용기한) '24.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 특구)위기지역 특구 등 9개 • (사후관리) (신 설)	■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 (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영화 제작비용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1.12.31.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영화 제작비용 • (좌동) • (좌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좌동) - (좌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조세특례제한법** ('22.1.1.)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적용기한) '24.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 특수관계인 제외 • (적용기한) '22.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 기간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1.12.31.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 (적용기한)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구 분	수도권	지방	중견	대
	중소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구 분	중소 수도권	중소 지방	중견 수도권	중견 지방	대 수도권	대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❶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❷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신 설〉	■ 투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 (감면요건) – (좌동) – (좌동) –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❶ 또는 ❷ ❶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❷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❶ (좌 동) ❷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공사부담금 투자세액 공제 배제	■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추 가〉	■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좌 동) • (좌 동) •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해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분과 정기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해 6월(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 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청년근로자의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감면율 - 중소기업 : 50% - 중견기업 : 30%	■ 청년근로자의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감면율 - 중소기업 : 50%(청년 90%) - 중견기업 : 30%(청년 5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 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산출세액 × 5%	■ 가산세 산정 합리화 •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5% ② 수입금액* × 0.02%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 미발급금액 × 20%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미발급금액 × 20%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 30만원 미만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 50만원 미만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소득세법** ('22.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조세특례제한법**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소득요건)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청년 ■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 ■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조세특례 제한법 ('22.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취득내역 • 투자운용(임대)내역 • 처분내역 • 〈추 가〉	■ 의무제출 자료 추가 • 취득내역 • 투자운용(임대)내역 • 처분내역 • 보유내역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2.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해외금융회사 •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 〈추 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 〈추 가〉	■ 해외금융회사 추가 •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확대 •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20.7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2.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적용대상 확대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영농상속공제 • (대상) 영농상속 재산가액 • (공제한도) 15억원	■ 공제한도 확대 • (좌동) • (공제한도) 20억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 (가업상속공제) 10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가업상속재산 50% 이상인 경우 20년 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 (그 외의 경우) 5년	■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 (상속세) - (좌동) - (그 외의 경우) 10년 • (증여세) 5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21.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신 설)	■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 국세청장이 거래명세서 제출 요구 시 60일 이내 제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부가가치세법 ('2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수출)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 - 〈추 가〉	■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 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관세법 ('22.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 국제무역선·기 • 〈추 가〉 ■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 • 선박용품·항공기용품 • 국제무역선·기內 판매물품 • 〈추 가〉	■ 대상선박 추가 • (좌 동) •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 대상물품 추가 • (좌 동) • (좌 동)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을 거친 물품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관세법 ('22.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 위반 시 처벌규정 • 1천만원 이하 벌금 -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위반 시 -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 시 - (신 설)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 시 조치 • (행정제재)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 영업정지 등 • (신 설)	■ 처벌수준 완화 등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벌금→과태료로 완화 - 벌금→과태료로 완화 -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시 ■ 벌칙규정 신설 • (좌 동) • 1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관세법 ('22.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	■ 제출서류 간소화 •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관세청장이 고시)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21.11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시행규칙 ('22.1.1.)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 수리·개조목적 일시수출입시 관세 면제 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공화국	■ 일시수출입 관세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공화국, 싱가포르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 보도자료(7.26),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21.11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시행규칙 ('22.1.1.)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전자적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전자적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22.1.1.)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21.7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22.1.1.)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 국가계약시범특례사업 도입(신설) • (배경) 혁신·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 • (내용)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 (대상)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 (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 (제도개선위 의결) - (기간) 2년 원칙, 기재부 협의 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국가계약법 시행령 ('22. 1분기 예정)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 종합심사낙찰제 〉 ■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 사고사망만인율 :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부여	〈 종합심사낙찰제 〉 ■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 사고사망만인율 : 모든 업체에 대해 가·감점 부여 •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 신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 신인도 • 사고사망만인율 :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부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 신인도 • 사고사망만인율 : 모든 업체에 대해 가·감점 부여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22.1.1. 예정)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⑤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주무관청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⑤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국세청으로 보고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21.1.1.)
		☞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9)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	■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신 설)	■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한 시정명령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득세법** ('22.1.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044-204-4073, 4043)
	(신 설)	■ 과태료 부과기준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소득세법 시행령** ('22.1.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044-204-4073, 4043)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 〈추가〉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 대상)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22.1.1.)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044-204-4073, 4043)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신 설)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제256의2 신설)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관세법** ('22.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안전성검사 결과 통관 보류 근거 규정 신설	■ 통관의 보류(제237조) • 통관보류 근거 -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통관의 보류(제237조) • 안전성검사결과 통관보류 근거 신설 - (현행과 같음) -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관세법** ('22.1.1.)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4-481-7841)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희망적금 출시		■ 청년희망적금 출시 • (대상)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4%를 장려금으로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22.1분기) (잠정)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7)
학자금·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 도입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장학재단 개별 채무조정 • (신복위) 금융채무 -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 - 원금감면(최대 30%) - 연체이자 전부감면 - 수수료 부과 - 분할상환 최대 10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채무 - 연체 6개월 이상 채무자(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제외) - 원금감면 불가 -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액감면 - 수수료 없음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 •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 -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포함) - 원금감면(최대 30%) - 연체이자 전부감면 - 수수료 면제 - 분할상환 최대 20년	**신용회복지원협약** ('22.1월 중)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 국내 및 해외주식은 정수 단위로만 매매가능	■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 •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수익증권발행신탁)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 차주단위DSR은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또는 ②신용대출 1억원 초과 취급 시 적용(차주단위DSR 1단계 적용) • 차주단위DSR 2단계는 '22.7월 시행, 3단계는 '23.7월 시행	■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대상범위 확대(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시행*) * '22.7월시행 → '22.1월시행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 * 차주단위DSR 1단계는 지속 적용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02-2100-2836)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함	■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 •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	**사립학교법** ('22.2.11.)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41)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원 신규채용 • 단, 교육감에게 채용 절차를 위탁할 수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 • (원칙)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교육감에게 위탁 • (예외)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위탁하지 않을 수 있음 – 실기시험 등 다른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 –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 입법예고안 기준('21.11.25.)	**사립학교법** ('22.3.25.)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64)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등 규정 없음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를 규정 • 사학기관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정함 • 행동강령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22.3.25.)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441)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국가장학금 확대	■ 2021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 5~6구간 연 368만원, 7구간 연 120만원, 8구간 연 67.5만원 지원 • 기초·차상위가정은 형제·자매 서열에 관계없이 연 520만원 지원 • 다자녀 가정은 형제 자매 서열에 관계없이 1~3구간은 연 520만원, 4~8구간은 연 450만원 지원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 5~6구간 연 390만원, 7~8구간 연 350만원 지원 • 기초·차상위가정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정은 첫째, 둘째는 1~3구간 연 520만원, 4~8구간 연 450만원 지원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를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소식〉보도자료)"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27, 6678)
교육급여 보장수준강화	■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 교육활동지원비 (초) 331천원, (중) 466천원, (고) 554천원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21.9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4)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신 설)	■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1~4명)으로 학습보충 및 상담 등 지원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044-203-7203)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기구화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 단,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단,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은 자문	초·중등 교육법 ('22.3.1.) 사립학교법 ('22.3.1.) 교육부 지방교육 자치강화 추진단 기획팀 (044-203-7083)
임원의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임	■ 임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3~5년 후면 학교 복귀 가능 ■ 임원의 당연퇴임 근거가 없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 유지	■ 임원의 결격기간이 2배로 연장되어 6~10년이 지나야 학교 복귀 가능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임 가능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1.12.25.)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7092)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임시이사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 근거 없음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 소송비용 지원 가능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보도자료〉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2.1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1)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	■ 소송으로 기본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도 관할청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에 어려움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보도자료〉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2.1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3)
	■ 학교법인의 외부 감사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하는 감사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보도자료〉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8.1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3)
기금운용심의회에 학교 구성원 참여를 확대	■ 기금운영심의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기금운용심의회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 직원, 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고,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3.25.)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3)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	■ 관할청이 사무직원의 중대비리를 확인하더라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음	■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의결 요구, 재심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3.25.)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7092)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	■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만 공개	■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3.25.)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7092)
이사회 소집 시 공지 의무	■ 이사회 소집 전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할 의무 없음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사립학교법** ('22.3.25.)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044-203-7092)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시행	■ 대상 - 학부생(만 35세 이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출규모 - 등록금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 연 3백만원 ■ 상환방법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	■ 대상 - 학부생(만 35세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 ■ 대출규모 - 등록금 • (학부생) 소요액 전액 • (대학원생) 석사과정 6천만원/박사과정 9천만원 한도 - 생활비 : 연 3백만원 ■ 상환방법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생은 초과분의 20%, 대학원생은 초과분의 25%를 의무적으로 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2.1.1.)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핵심 학술 DB지원 • 핵심 전자저널 및 학술 DB·일반저널 구독 종수 - 핵심전자저널 : 2종 - 학술DB·일반저널 : 46종	■ 핵심 학술 DB지원 • 핵심 전자저널 및 학술 DB·일반저널 구독 종수 - 핵심전자저널 : 3종 - 학술DB·일반저널 : 54종	**학술진흥법**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653)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학습자 중심 강좌 제공 - 해외석학 강좌	■ 학습자 중심 강좌 제공 - 국내·외 석학강좌 -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 제공 - K-MOOC 플랫폼 고도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6)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신 설)	■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의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교육기본법** ('21.9.24.)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044-203-673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 금지(당구장은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2.3.25.)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규정」강화	■ 측정횟수 •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항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 후속조치 • 교육부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횟수 •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측정횟수 •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후속조치 • 교육부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공기질 측정장비 점검횟수 •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학교보건법** ('22년 3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제도 확대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제도 실시 • 안전 인증제 주요내용 - (대상) 교육시설 73,865개동 - (인증주기) 5년, 10년주기 - (기준) 3개 안전분야 심사 • '21년 200교(예정)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제도 실시 • 안전 인증제 주요내용 - (대상) 교육시설 73,865개동 - (인증주기) 5년, 10년주기 - (기준) 3개 안전분야 심사 • '22년 1,800교(예정)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12.3.)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5)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시-6시)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 위반 시 게임을 제공한 사업자 형사 처벌	■ 제도 폐지 ※ 게임시간선택제로 게임이용 시간 제한 제도 일원화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청소년 보호법 ('22.1.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02-2100-629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22년 신규사업)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보도자료〉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건강가정기본법 ('20.5.1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7)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사각지대 존재 • 노무·심리상담 등 전문분야 서비스 외부 연계·분절적 지원 • 재직여성의 생애최초 경력단절 위험에 선제적 접근 부재 •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지속적인 사업 참여 유도에 한계	■ 원스톱·맞춤형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강화 •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통합적·맞춤형 고용유지서비스 지원 • 경단 발생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기업과의 전략적·체계적 협력망 구축 및 맞춤형·지속적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08.12.6.)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02-2100-620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월 11,500원) 지원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 (월 12,000원) 지원 * 단,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청소년복지지원법 ('22.1.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624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대상 가족역량강화지원 제공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조손 등 취약가족 • (내용)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지원 및 부모·자녀양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지원)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기존 지원대상에 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 • (내용)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및 부모·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청소년부모 특화 추가지원 - 전문상담 연계 - 청소년부모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22.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3, 6345)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 조손가정 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90%, 시간제 가형 취학 75→80%	■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지원확대)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부모 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90%, 시간제 가형 취학 75→80%	아이돌봄지원법 ('21.9.16.)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근로·사업 소득공제 적용	■ 2022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여성가족부 고시개정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고시 ('22.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우편·온라인 신청(www.childsupport.or.kr)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 포용안전망 구축		■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사업 •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 • 각 지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4)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無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활동 지원	■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월)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무료법률지원 사업비 추가 확보 (254백만원) -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 지원	스토킹 처벌법 ('21.4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5, 6426)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 고지방법 - (1차) 카카오톡, (2차) 네이버, (3차) 우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1차) 미열람자 대상 네이버 앱(2차) 송부하고, 네이버 앱(2차) 미열람자 대상 우편(3차) 송부	■ 고지방법 - (1차) 카카오톡, 네이버앱 (2차) 우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카카오톡, 네이버 앱(1차)에 동시 송부하고, 미열람자 대상 우편(2차) 송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03 보건·복지·고용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미시행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대상) 만 51-70세 여성농업인 • (규모) 9천명 • (내용) 근골격계 영상검사, 유해요인 노출력조사 등 실시 예정 ☞ (참고)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 정책자료〉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개요	('22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22.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 설)	■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1년 내 사용) 지급 • (지급 대상)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2.4.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영아수당 지급	■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지원(0세 20만원, 1세 15만원)	■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이용권)카드로 지원	**아동수당법** ('22. 1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아동수당 지급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22. 4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노인일자리 수: 82만개(추경포함) ■ (신 설)	■ 노인일자리 수: 84.5만개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만 60세 이상 5,000명 대상 외부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7)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부재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기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가능, 별도 고시 예정)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2022.7.1.	**국민연금법** ('22.7.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확충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1,200억원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보강 1,420억원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경우,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안내** ('22.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1)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 필수의료 협력분야 - 퇴원환자 연계 - 중증응급질환 협력 - 감염 및 환자 안전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 ■ 필수의료 협력분야 - 퇴원환자 연계 - 중증응급질환 협력 - 감염 및 환자 안전 - 정신 및 재활 *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22.2월 시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2.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확대	■ 13개 시도별 지원단 운영	■ 15개 시도별 지원단 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2.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신 설)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6개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22.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상병수당TF (044-202-2748)
자활사업	■ 자활사업 참여자 5.8만명 (추경 6.6만명) ■ 자활참여 일 급여 29,240~56,950원 ■ 광역자활센터 15개소	■ 자활사업 참여자 6.6만명 ■ 자활참여 일 급여 30,120~58,660원 (3% 인상) ■ 광역자활센터 16개소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첨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1.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액 확대	■ 정부지원금 매칭비율 및 최대한도 • (정부 매칭비율) 1:1 • (최대한도) 월 5만원	■ 정부지원금 매칭비율 및 최대한도 • (정부 매칭비율) 1:2 • (최대한도) 월 10만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22.1.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자립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청년 • 최대 36개월 지급	■ 자립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 –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최대 60개월 지급	아동복지법 ('21.8.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9)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8개 시도 운영(지방비)	■ 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 시도 운영 (국비+지방비) • 자립지원 전문가 배치(120명) ☞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아동복지법 ('22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3)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 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3년간(2022~2024) 10개 지역 200명 대상 지원 * 시행지역은 '22년 초 공모를 거쳐 선정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별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조성 및 자립지원인력 배치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2.1월~'24.12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통합돌봄 연계TF (044-202-3281)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9만 9천명 • 가산급여 대상 3천명, 단가 1,5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9천명 • 월 제공시간 100시간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연간 돌봄시간 720시간 • 지원대상 4천명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10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지원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 지원대상 10만 7천명 • 가산급여 대상 4천명, 단가 2,0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1만명 • 월 제공시간 125시간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연간 돌봄시간 840시간 • 지원대상 8천명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10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본인부담제 도입을 통한 지원 가능(정부 60%, 본인부담 4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2. 1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22. 1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2.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 • 소득보험료 - 최저보험료 월 14,380원 - (경감)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기존 수준 유지 • 재산보험료 공제 - 재산 구간에 따라 500~1,200 만원 •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1,600cc 초과 3,000cc 이하 30% 인하 ■ 피부양자 • 연소득 기준 - 3,400만원 초과 • 재산 기준 - 과표 5.4억 초과(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 형제·자매 인정기준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8억 초과 시 탈락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 3,400만원 초과 ■ 공통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 30%	■ 지역가입자 • 소득보험료 - 최저보험료 월 19,140원 - (경감) 제도개선위에서 연장 여부 논의 • 재산보험료 공제 - 5,000만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피부양자 • 연소득 기준 - 2,000만원 초과 • 재산 기준 - 과표 3.6억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 형제·자매 인정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탈락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 2,000만원 초과 ■ 공통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 5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시행	(신 설)	■ 건강 친화 기업 인증 • 건강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건강 친화 경영 지원(컨설팅, 홍보 등) ■ 건강 친화 포럼·성과 대회 개최 ■ 건강 친화 조사·연구 수행	**국민건강증진법** ('21.12.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	**건강검진사업안내** ('22.1.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19년 1개 시도(광주)에서 수행하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 확대하여, '21년 현재 12개 시·도에서 수행 ■ 마음안심버스 17개 시·도 27대 확충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7개 시도 전국 확대 ■ 마음안심버스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본격 실시 및 추가 확충(27→45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1)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개소 운영, 총 3,260명 인건비 지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 운영, 총 180명 인건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11개소 신규 개소, 300명 인력 추가 증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0개소 신규 개소, 60명 인력 추가 증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1)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 자타해 등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 상황 시 즉각적 초기대응을 위한 전담 병상 등 인프라 부족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22년 8개소 예정) -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한 정신질환자 전담 응급병상 및 정신건강전문의 등 인력 확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증원	■ 상담인력: '21. 57명	■ 상담인력: '22. 80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2.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확대	■ 수행기관: '21. 77개소	■ 수행기관: '22. 104개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2.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 지역: '21. 3개 시·도 * 인천, 광주, 강원	■ 지역: '22. 9개 시·도 * 서울, 대구, 세종, 충남, 충북, 제주 추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2.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살예방 지원대상 확대	■ 자살예방사업비 지원대상: '21. 240개소 ■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대상: '21. 16개소	■ 자살예방사업비 지원대상: '21. 260개소 ■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대상: '21. 17개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2.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2)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의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 및 치료연계 절차, 수가 없음	■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신설 • 선별상담료: 12,800~17,730원 • 치료연계관리료: 14,520~28,930원 * 시범지역 비정신과 의과 의원 이용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수가 적정성 평가하여 정규수가 전환 및 확대 추진 예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22. 상반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신 설)	■ 환자혈액관리 임상연구 ■ 환자혈액관리 전향적 코호트 연구 ■ 환자혈액관리 역학 통계연구 ■ 적정수혈 의료기술 개발	**혈액관리법** ('22. 7월 예정)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5~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 전공의 수련과 병행해 의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임상수련 후 기초과학 및 융복합연구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 학위 취득 이후의 신진의사과학자에게 안정적 연구기반 지원 ■ 현장수요에 기반한 핵심연구인력 해외연수 지원 ■ 글로벌 백신 연구를 위한 국내외 기업-연구소 간 연구지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2~'2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9)
국산 백신 개발 지원 확대	■ 코로나19 백신 비임상 및 임상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 등 백신 자급화기술개발	■ 코로나19 백신 비임상 및 임상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 등 백신 자급화기술개발 ■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대응 가능한 백신 플랫폼 확보 및 전임상·임상시험 등 지원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22년 172억) • 신속·범용백신 기술개발('22년 56억) •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22년 47억) • 백신 기반기술 개발('22년 65억)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2. 상반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72)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	(신 설)	■ 임상용 시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부장을 선별하고, 별도 지원하여 국내 생산기반 투자 촉진 •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지원 •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지원 ■ 자체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위한 공동활용 지원 •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 시장수요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인력에 법정 필수 교육과 실습교육 제공 ☞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상·하반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 설)	■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 - (사업내용)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성능시험 비용 지원,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신청공고) '22.1분기 ■ 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4억) ■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 방안 연구(61억) ■ 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3억)	('22. 2월)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044-202-168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최저임금액 인상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 (월환산액 기준)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2.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적용대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21.1.1.~)	■ (적용대상)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 ('22.1.1.~)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사장님 달력의 빨간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에요_리플릿)	근로기준법 ('22.1.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	(신 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시정신청 대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시정명령 내용) 차별적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 (미이행 시)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5.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2.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적용 직종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까지 확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2.1.1.)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7919)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플랫폼종사자: 지원 없음 ■ 근로자·예술인·특고 : 월 보수 220만원 미만 자 지원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예술인·특고 :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자 지원 * 다만, 근로자(일용근로자) 경우 1년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2. 1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지원기간)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지원기간) 6개월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전 사업장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운영 규정** ('22.1.1.)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778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Ⅰ유형: 40만명	■ Ⅰ유형: 50만명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Ⅰ유형 참여자 • (지급 수준)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회 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1.)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1.1.) 30인 이상 사업장 • ('22.1.1.) 1인 이상 사업장	■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1.)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1.1.) 30인 이상 사업장 • ('22.1.1.) 1인 이상 사업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6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직업소개 방식으로 제공 • 가사종사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가 어려움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보장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2.6.16.)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신 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거규정 신설 (제4장의2) • (재정지원) 부담금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2.4.1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신 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시행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중장년-"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 ('22.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9)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지자체 – 공무원, 근로자 : 3.4% • 공공기관 : 3.4% • 민간기업 : 3.1%	■ '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지자체 – 공무원, 근로자 : 3.6% • 공공기관 : 3.6% • 민간기업 : 3.1% ☞ (참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의2 ('22.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신 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신설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내용)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 • (지급)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월 10만원)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월 30만원)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폐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22. 1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2. 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건비 지원 강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45만원 ~12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 • 1인당 월 지원금 한도 52만원~138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2. 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신 설)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 최대 1년간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22. 1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 7448)
K-Digital Training 훈련유형 신설	■ K-Digital Training • 훈련기관과 디지털·신기술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춘 현장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 훈련유형 •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 기존 유형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민간 협·단체 주도 – 협·단체별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 설계·운영 •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 삼성, KT,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설계하고 운영하는 훈련과정 • 지역·주도형 아카데미 –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기업·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설계한 훈련과정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에 개설하며, 지역 훈련생 모집률 평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2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13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통합검색〉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 1.1.] 제22조제1항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2.1.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309)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 대기업은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20.5월) • 중소기업은 적용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설계 지원 •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300~500만원) 외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2. 2월~)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안전투자혁신사업 개편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지원대상)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3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 (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 (지원한도) 최대 1억원 한도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조정 • (지원대상) - (위험기계교체) ('21)3종→ ('22)3종+노후 안전검사 대상(6종) 추가 - (위험공정개선)('21)뿌리산업→ ('22)뿌리산업+고위험3대 업종(추가) • (지원한도) - (위험기계교체) 최대 7천만원 - (위험공정개선) 최대 1억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2. 1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	■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미래유망직종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21) 59개 → ('22) 70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08.12.6.)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신 설)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 개별 제품 소관 법령에 따라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 (제품 중심) • 다양한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운 한계	■ 다양한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총량으로 관리(사람 중심) • (평가대상) 소비자가 위해성 평가를 요청하거나 외국에서 생산·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 (사후관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종합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보도자료〉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강화 보도자료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22.1.28.)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1)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2단계 안전관리 체계 운영 ①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② (유통단계) 유통 최종단계 수거검사 - 부적합 시 회수·폐기 애로	■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3단계로 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운영 ①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② (유통단계)현장검사소에서 길목검사 ③ 유통 최종단계 수거검사 - 현장검사소에서 부적합 시 즉시 유통 차단하는 원스톱 검사체계 운영	**「식품위생법」** ('22.1.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20)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 최초 정밀검사 실시 • (원칙) 수입식품 등이 최초 수입되면 정밀검사 실시 :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은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정기 정밀검사 실시 • (원칙) 수입식품 등이 최초 수입되면 정밀검사 실시 :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은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매년 1만7천여건에 대해 정기 정밀검사 실시 ☞ (참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17.2.2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 관리과** (043-719-2210)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 제약 현장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소에서 적용 가능한 QbD 예시모델 개발 • 주요 제형별 실험실(Lab), 시생산(Pilot) 규모 QbD 예시모델 개발('15~)	■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상업 생산 규모의 QbD 예시모델 개발 • 고형제 실생산(Commercial) 규모 예시모델 개발('2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043-719-2761)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 마약류가 가정으로 처방·조제된 이후의 수거·폐기 사업 부재	■ 가정 내 남은 마약류 수거·폐기를 위한 서울지역 시범사업 시행 • 가정 내 남은 마약류를 지정된 약국으로 반납하면, 안전한 절차를 통해 폐기 -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 ☞ (관련규정)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9.12.1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043-719-2891)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 온대성생약 연구 및 전시를 위한 옥천센터 운영 • 비정기적인 전시관 운영	■ 옥천센터 외에 아열대성생약 연구 및 전시를 위한 제주센터 운영 • 전문 전시관 상설 운영 • 한약(생약) 종사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043-719-4801)

질병관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의료인력 등 재정 지원	■ 현행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가능	■ 제2항 신설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염병의 방역·검사·치료 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	**감염병예방법** ('22. 3월, 예정)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20)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 사업 개요 • (대상) 경상남도 10개 시·군 * (지역)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예산) 30,000천원 (국비 50%, 총 사업비 60,000천원)	■ 사업 개요 • (대상) 4개 시·도 17개 시·군 - (기존) 경상남도 10개 - (추가) 경상북도 2개, 전라남도 4개, 충청북도 1개 구분 / 지역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 영천시, 청송군 전남: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충북: 영동군 • (예산) 100,000천원 (국비 50%, 총 사업비 200,000천원)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043-719-7174)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형) 도입·공급	■ 국내 소아용 항결핵제 부재 - 부정확한 용량 - 알약 분절 - 맛이 쓰고 복용 힘듦 ■ 시럽제 없음	■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도입 - 체중에 맞는 정확한 용량 - 시럽형 - 과일 맛으로 복용 쉬움 ■ 약 600명분 도입 * 이소니아지드 시럽제	**• 결핵예방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13)

질병관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 권역감염병전문병원 4개소 구축 * 호남권(조선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 신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수도권) 1개소 포함 5개소 구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11)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만 12세 여성청소년	■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2. 3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086개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 추가 지정된 희귀질환은 다음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희귀질환관리법** (추가지정질환: '22. 1월, 예정)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1)

질병관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가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부양의무자의 범위 가)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나)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등) ■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가) 신청자(환자)의 딸이 결혼하여 출가한 경우 출가한 딸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나) 여성 신청자(환자)가 결혼하여 출가한 경우 친정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다) 결혼한 남성 신청자의 경우 장인, 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라) 환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부양의무자의 범위 가)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나) 신청자(환자)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가) 배우자의 부모 ※ 신청자의 부모만 부양의무자에 포함 ☞ (참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정보·알림〉고시·지침〉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희귀질환관리법** ('22.1.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주간 건강과 질병(PHWR)」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 주간 건강과 질병 국문 발행 • (목적) 질병관리청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근거 기반 질병·건강 정보를 국민과 보건의료인에게 제공 ■ 주간 건강과 질병 배포 • 질병관리청 공용 누리집 내 게시	■ 주간 건강과 질병 국영문 동시 발행 • (목적) 질병관리청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근거 기반 질병·건강 정보를 국민과 보건의료인에게 제공, 국제 사회 공유 ■ 주간 건강과 질병 배포 • 주간 건강과 질병 전용 누리집 구축·운영 및 게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22.7.1.)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043-219-2950)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 저소득층의 일부만 선착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저소득층 모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2.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6)
아트컬처랩 조성	(신 설)	■ 기초예술분야 유일한 장르 간, 기술 결합 등이 가능한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❶ 창업·창직: 비즈센터 — 전문가 상담·컨설팅 (경영일반·투융자·법률 등) ❶ 창업·창직: 예술기업 입주 공간 — 7~12평형(5인 내외 규모), 15~20평형(10인 내외 규모) 입주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등 ❷ 교류·교육: 교육 공간 — 예비·현업 종사자 대상 전문역량 교육 (가변형 강의실 2~5인, 10인, 20인, 50인 규모별) ❷ 교류·교육: 네트워킹·교류 공간 — 가변형 행사공간, 팝업스토어 ❸ 창·제작: 창·제작 스튜디오 — 영상음향 스튜디오, 자료실, 워크룸 등 ❹ 유통·매개: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연·유통 — 블랙박스형 행사 공간 (시제품 고객검증, IR행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규정 및 법적 보호 절차 부재 •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규정 부재 •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있지만, 신고-조사에 대한 규정만 존재	■ 예술인 권리에 대한 규정과 법적인 보호 절차 마련 • 공무원 등의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과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여 • 신고-조사 이후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와 구제조치 발령* * 수사의뢰, 징계의뢰,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보도자료〉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2.9.2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8)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 지원 • 관광기금 융자 지원 5,940억원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500억원 • 상환 도래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 지원 • 관광기금 융자 지원 6,490억원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원 • 상환 도래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최대 1% 이자 감면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절실한 금융지원 강화해 관광업계 부담 낮추고, 안전한 여행 기반 확대해 관광 수요 늘린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1.12.2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 (방법) 집합교육 • (대상) 업체 소속 문화재수리 기술자 • (시간) 32시간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 (방법)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 (대상) 문화재수리 참여 문화재수리기술자 • (시간) 32~64시간 - 신규교육 32시간(자격취득 후 1년 이내) - 정기교육 64시간(신규교육 후 5년 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11.30.)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 탄소포인트제의 에너지 절약 위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민간 기업과 협업으로 개인 단위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수행 시 인센티브 지급 • 개인의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제로웨이스트숍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가구 단위 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로 참여 기회를 확대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참여자 편의성 향상	**탄소중립기본법** ('22.1.1.)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는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념)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 •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 검토가 필요한 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 •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취약지역·계층을 보호 • (주요정책) - 실업 등에 대한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정의로운 전환센터 설립 등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21.8.31.)	**탄소중립기본법** ('22.3.25.) * 기후대응기금: '22.1.1. 시행 * 기후변화영향평가: '22.9.25. 시행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044-201-6978)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 •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대상 •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 개정 보도자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2.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측정대행업관리시스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무사용 도입	■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제출 •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측정대행업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측정대행업체 • (방법 및 시기)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www.ecolab.or.kr)을 통해 계약일 전 제출	■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이외의 측정정보를 모두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 • (대상) 전 분야 측정대행업체 • (방법)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www.ecolab.or.kr)을 통해 입력 및 관리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의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사용 - 대기·수질 1~2종의 이외의 악취,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분야도 제출을 제외한 모든 정보 입력 후 사용 • (입력정보)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22.8.18.)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교육사 제도 전면 개편	■ (명칭)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자격부여권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 (등급별 자격요건)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관련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9년 이상 경력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환경관련 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6년 이상 경력 3급: • (정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이수 • (간이) 환경관련 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종사 경력	■ (명칭) 환경교육사 • (자격부여권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등급별 자격요건) 1급: • 좌동 • 환경교육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 〈삭제〉 2급: • 좌동 • 환경교육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좌동 3급: • 좌동 • 폐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1.6.)
	• (제한사항 및 자격취소) – 없음 • (보수교육) – 없음 • (벌칙) – 없음	• (제한사항 및 자격취소) – 동일명칭 사용 및 자격증 대여금지 • (보수교육) 의무화 – 3년마다 1일(7시간) • (벌칙) – 과태료: 동일명칭 사용, 보수교육 미이수 – 자격취소: 자격증 거짓·부정취득 및 대여, 결격사유 해당 등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교육팀 (044-201-6536)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계획 의무제 도입	■ 허가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포함)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4.14.)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06)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배출 시 일반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1.12.2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 ) 신설·적용	■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주요 재질별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하고 재질별 분리배출토록 안내 	■ 기존 분리배출 표시대상 포장재 중 실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는 별도 마크를 표시하고 종량제봉투로 배출토록 안내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22.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 정책을 관리 위주로 전환	■ 기존 댐건설법은 댐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댐의 건설에 중점을 둠 ■ 댐건설 시 사전검토협의회 및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 정책을 관리 위주로 전환 •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신설 – 「댐건설법」제3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 •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2.6.16.)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10-762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 생활·공업용수 출연금 출연비율 – 개정전 : 20% 이내 ■ 다목적댐·홍수조절용댐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및 그 조성산식을 별표 7에서 정함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내용은 생태공간 조성사업 등에 한정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 생활·공업용수 출연금 출연비율 확대 – 개정후 : 22% 이내 ■ 다목적댐·홍수조절용댐 기본지원금,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 계수별(발전용량, 용수공급능력, 저수용량) 지원금을 댐 규모별로 보다 상향 세분화 •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 변경 및 변경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에 대한 조정계수(조정산식) 변경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내용 추가 – (지역지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 등 – (주민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 – (기타사업)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2.1.1.)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10-762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생 략) 2) 납은 질량분율로 0.06% 이하일 것 (신 설)	•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생 략)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류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DIBP(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 함유량은 0.1% 이하일 것	환경보건법 시행령 ('22.4.7.)
	•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 이하일 것 나. 생략 (신 설)	•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나. 생략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 함유량이 0.1% 이하일 것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화관법 민원의 업무처리	■ 화관법 민원의 비전자 접수·처리 • 대면 또는 우편 접수·결재 - 환경민원포털, 내부결재 시스템, 우편송부 • 종이서류 민원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통합 DB 미구축 - 각 기관 구축된 DB연결 어려움	■ 화관법 민원의 전자적 접수·처리 가능 • 비대면 민원 접수·결재 - 24시간 민원 신청 및 처리단계 확인 가능 • 종이 없이 민원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통합 DB구축 - 각 기관 DB 연계·통합관리 ☞ (참고) 환경부유역·지방 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 "화관법 민원24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화학물질관리법 ('22.2.18.)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 지진속보 발표시간 • 규모 3.5 이상~5.0 미만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는 최초관측 후 20~ 40초 이내 발표	■ 지진속보 발표시간 •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5.0 미만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는 최초관측 후 5~10초 이내 발표 • 규모 3.5 이상~4..0 미만 지진에 대해서는 최초관측 후 20~ 40초 이내 발표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3)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구축 • (취약계층) - 지역방송사 자막방송 송출 (23개 방송사) - 지자체 음성송출시스템 활용 음성방송(14개 지역) • (야외근로자) - (집배) 부산·경북지방우정청 관리자 대상 영향예보 제공 - (건설) 맞춤형 날씨정보 모바일 웹 운영 및 건설현장 대상 QR코드 배포	■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 (취약계층) - 자막방송 송출 지역방송사 및 음성방송 송출 지자체 확대 • (야외근로자) - (집배) 부산·경북 외 타 지역 우정청으로 확대 - (건설) 건설업 안전보건관계자 대상 영향예보 신규 제공(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협조) - (배달·택배)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과 연계한 영향예보 신규 제공 (안전보건공단 협조)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02-2181-02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 체계로 개편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사업 공고 시 전체 지원 과제 수 기준으로 제시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사업 공고 시 학문분야별로 별도 공고·안내 • 학문분야별 지원 과제수 사전 파악 가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2.3.1. 사업개시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 (044-202-4536)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거래 일부 허용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의 적합성평가를 면제 중으로, 타인에게 판매 시 면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제85조 제5)	■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 (참고) 과기정통부홈페이지〉 보도자료〉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일부 허용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파법 시행령 개정** ('22년 상반기)(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일정한 형식의 서면, 전자 노트만 연구노트로 인정	■ 연구노트의 형식 요건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하여 연구의 특성을 반영 가능 • 연구 수행 중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들도 연구노트로 인정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 노트지침** ('22.1.1.)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044-203-6956)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소용품의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 실시	(신 설)	■ 수소용품의 종류 •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 (예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된 것과 연료소비량이 232.6kW를 초과하는 고정형 연료전지 • 수전해설비 • 수소추출설비 ■ 수소용품의 제조허가 • (대상)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 •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 ■ 수소용품의 제조등록 • (대상)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 • (등록관청) 산업통상자원부 * 3년 마다 재등록 필요 ■ 수소용품의 검사 • (대상) 수소용품 • (예외)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등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위탁수행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2.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신 설)	■ 렌터카 등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 (대상)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자동차 대여사업자,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⑤ 화물운수 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친환경차법** ('22.1.2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충전편의	■ 신축시설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중 ■ (신 설) ■ 전기차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보유 ■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한도 50%	■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 ■ 전기차충전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단속역량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변경 ■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한도 80%로 상향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친환경차법** ('22.1.2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2)
재제조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제품 표시제」 도입	■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재제조 대상 품목을 공동으로 고시(법 제23조) ■ (신 설)	■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법 제23조(재제조 대상 등) 삭제를 통해 재제조 대상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 재제조 제품 표시제 도입 •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재제조 표시 의무화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2.4.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044-203-4246)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 (신 설)	■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 ('22.2.1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개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가능 • 나머지 금액은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	■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상향할 수 있는 예외 근거 신설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합의 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8.1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 미시행	■ 법률 근거가 마련('21.6.15. 개정)되어 제도 도입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인정요건에 부합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하고 경력과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22.6.16.부터 시행하며, 대통령령 마련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2.6.16.)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성기업 주간 신설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사업 근거 마련	(신 설)	■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함 •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우수 여성경제인에 대한 포상, 홍보 등 기념행사 추진 예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2.4.2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7)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 미비 •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 부족 • 민사적·행정적구제수단 부재 • 법적 근거 부족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거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 데이터산업 발전에 저해	■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 마련 •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 마련 • 민사적·행정적구제수단 가능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거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보도자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2.4.20. 시행 예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할 법적 기반 미비 •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만 보호 • 실제 규모가 큰 재산적 피해는 보호받지 못하였음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할 법적 기반 마련 •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신적 피해(위자료) 외에도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2.6.8. 시행 예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 30일 • 거절결정등본 또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 3개월 • 거절결정등본 또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 (참고) 1.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 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22.4.20.)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에는 출원을 별개의 출원으로 나눌 수 없음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분리출원 가능 • (분리대상) 거절결정당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 분리출원 가능 • (분리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분리 제한사항) 청구범위 유예출원 또는 국어가 아닌 외국어 출원을 통한 분리출원은 금지 – (타출원으로 파생 금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금지 ☞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특허법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자료	**특허법** ('22.4.20.)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항목별 편성규제 • 오락프로그램 – 편성비율 상한 : 50% 이하 •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의무편성비율 : 80% 이상 – 지상파DMB 의무편성비율 : 60% 이상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 : 허가차수 •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 편성비율 상한 : 80% 이하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 지역MBC 의무편성비율 : 30% 이상 • 편성비율 산정기간 – 편성규제 항목별로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 등 상이하게 규정됨	■ 항목별 편성규제 완화 • 오락프로그램 – 편성비율 상한 : 60% 이하 – 지상파DMB에 대한 예외 규정 : 오락물 60% 이상 편성 가능 •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의무편성비율 : 70% 이상 – 지상파DMB에 대한 예외 규정 : 주된방송분야 60% 이하 편성 가능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 : 방송사업매출액 •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 : 90% 이하 – 적용 제외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 지역MBC 의무편성비율 : 20% 이상 • 편성비율 산정기간 –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방송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한다' ('21.4.27.)	**방송법 시행령** ('22.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2.1.1.)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02-2110-1285)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업 허가	■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진입 규제 완화	**위치정보법** ('22.4.20.)
	■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 관련 법적 근거규정 부재	■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받도록 법적 근거규정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규정 신설 • 위치정보를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 또는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 신설	
	■ 사후 관리감독 강화 • 관련 법적 근거규정 부재	■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 신설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 실태점검 의무화 및 파기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 정책과** (02-2110-1527)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적용대상 : 웹하드사업자,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인터넷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 •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 신고기능 마련 및 14일 이내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한차례 연장 가능) – 불법촬영물 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및 연관검색어 제한 –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 기술적용 및 해당 정보 게재 제한('22.6.9.까지 계도기간 적용) –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보도자료〉12월10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 기술적용 및 해당 정보 게재 제한** ('22.6.9.까지 계도기간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신산업 발전 위해 민간기업 제공 제도 도입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 금지 • 다만 공공복리 또는 연구목적으로만 제공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만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하도록 함 • 관리기간은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안심사를 할수 있도록 함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산업에 활용한다. 보도자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2.3.17.)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0)
상습 과적·적재불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건설기계는 통행료 할인 (30~50%)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건설기계는 통행료 할인 (30~50%) • (제외) 최근 1년간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에 따른 과태료·벌금·구류·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7) **한국도로공사** **영업정책팀** (054-811-2224)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지침 개정완료, '21.3월)		**국가항공보안계획** (지침)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신 설)	■ GPS의 위치오차를 3m 이내로 보정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재보다 정확도 높은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공항시설법** ('22. 하반기)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5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국립농업박물관 건립 추진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22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위치) 경기도 수원시(구. 농촌진흥청) (규모) 부지 50천㎡, 건축연면적 18천㎡ (주요구성) 농업관, 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및 온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	('22.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044-201-1545)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 농지원부 작성 기준 •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 ■ 농지원부 작성 대상 • 1천㎡ 이상의 농지 •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 ■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원부 작성 기준 • 필지별(농지 지번별) ■ 농지원부 작성 대상 • 면적제한 폐지 ■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농지법 시행령 ('22.4.1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65세→만60세), 우대상품 도입	■ 농지연금 가입연령 • 만 65세 이상 ■ 농지연금 우대상품 없음	■ 농지연금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 농지연금 우대상품 도입 •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우대상품 도입 (월지급금 10%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 도입 (월지급금 5% 추가 지급) * 영농경력 30년 이상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농어촌공사법 ('22.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출단위 세분화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시군" 단위로 산출 •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시군)로 묶어 보험료율 산출 • (문제점)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 * 사과, 배 품목에 시범적용 • 특정 읍면의 손해로 인해 시군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가별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 산출가능 •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은 공정하게, 보험의 혜택은 폭넓게"	농어업재해보험법 ('22.1.1.)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범 지원 ※ 5개 시·군, 25억원(개소당 10억원, 국비50%)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재생지원 -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위해 시설 이전·철거 등 정비 지원 ※ 45개 시·군, 315억원(개소당 5년간 140억, 국비 50%)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22.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발주 관리 및 다양한 수요처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하반기 예정)	('22.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 복지과 (044-201-1527)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 우대사항 없음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우대 • (직매장 지원) 사회적 경제활동 가점 (최대 15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22.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 복지과 (044-201-1530)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신 설)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실시 • '22년 4개 농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컨설팅, 마을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22.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5)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 (농어촌공사) 설치	■ 농지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전담하는 체계 • 지자체 외에는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 * 지자체는 인력·전문성 부족에 따라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농지 관리 한계 발생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 (농어촌공사) 설치 •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하여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 지원 - 농지상시관리 및 지자체 교육·컨설팅을 등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어촌공사법 ('22.2.1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2)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제도 운영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농기계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를 기재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영농계획서 미제출 • 1필지를 공유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수 제한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기존 의무기재 사항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비율 및 위치까지 기재하고,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법 ('22.5.1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귀농귀촌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찾아가서 확인	■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확인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22.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 도정공장 시설 노후화, 쌀 안전보관 시설 미흡 ■ 품질 민원 발생 시 전담 처리 기관 부재 ■ 보관창고 매월 1회 점검. 부실창고 적발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 중심으로 도정·공급하고, 도정한 쌀은 저온보관 의무화 ■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 및 복지용 쌀 민원처리 전담기관 운영 ■ 정부양곡 품위변질 우려기(5,10월), 위험기(6~9월)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2회 이상 점검, 부실 창고 제재 강화 ☞ (참고) 공지(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시달)	('21.11.30.)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시행	(신 설)	■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하여 간단관개 및 얕게대기 실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3)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도입	■ 관계주민의 의견청취 • 해당없음 ■ 공고 및 의견 제출 • 해당없음	■ 관계주민의 의견청취 • 의견청취 대상 -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 해당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 공고 및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시행 보도자료	**농어촌정비 시행령** ('21.11.1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신 설)	■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치료제·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기준 •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권장 - 기존 생산업자('18. 3. 22일 이전 허가자)의 사육설비 바닥 면적 30% 이상 평판 설치 • (동물미용업)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 없음 • (동물운송업) - 안전시설 설치규정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 없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기준 •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의무화 - 기존 생산업자('18. 3. 22일 이전 허가자)의 사육설비 바닥 면적 50% 이상 평판 설치 • (동물미용업)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 (동물운송업) - 동물을 위한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6.1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동물보건사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시험일 : '22.2.27.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수의사법** ('21.8.2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3, 2525)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 (신 규)	■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22~'24년) • 소 단기사육 실증실험, 축산선진국 소사육 방식 조사, 탄소배출량 측정조사,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단기 출하육 시장현황 분석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 축산업 허가요건 •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	■ 축산업 허가요건 •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장비·시설 등 ※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 '22년 상반기 축산법 시행령(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허가·등록 대상·범위) 개정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축산법령 개정 보도자료 (예정)	축산법 ('21.6.1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관세청에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수행 • 소관 부처 : 관세청 • 근거 법률 : 관세법 • 신고의무자(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신고 기관 및 방식 : 관세청(UNI-PASS) 수입농산물 유통관리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수행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근거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신고의무자(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신고 기관 및 방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유통관리시스템 (www.naqs.go.kr/pass)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를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하여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보도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2.1.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첨단기술접목을 통한 유통·물류센터 자동화 및 스마트화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가축 질병 대응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보급 및 국내 미유입 가축질병 바이러스 특성규명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주요 노지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신 설)	■ 전기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사업공고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기농업자재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의 등록된 농지 ■ (지원항목 신설)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 일반농가 ■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의 등록된 농지 -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사전 제출 ■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규도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2. 1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 유산 등재 전 해당 갯벌에 대해서 「습지보전법」에 따라 타 습지보호지역과 동일하게 관리 • 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예산지원, 관리계획 수립 등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된 기본 계획에 기초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마련 •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생물다양성 및 철새 서식지 보전 등 유산갯벌의 가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갯벌 세계유산의 인식·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및 다른 유산갯벌과의 국제협력 강화 ☞ (참고) 해수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잰걸음"	**갯벌법** ('22년 하반기 예정) **해양생태과** (044-200-531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	■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는 갯벌 복원사업 실시	■ 기존 갯벌 복원에 추가하여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22년 4개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27)
위판장 저온유통체계 구축	■ 위판장 위생 등과 연계되지 않은 제도운영 및 시설지원 • 위생 위판장 별도 선정 등이 부재한 경영위주의 위판장 평가 • 저온유통체계 마련의 인센티브 부족 • 위판장에 대한 단순 현대화 시설 지원	■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마련 • 위판장 평가를 개편한 위생 위판장 평가 및 지정 추진 • 저온유통체계 유인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비축물량 배정 등) • 단순 시설 현대화 지원을 넘어 향후 시설 재투자를 위한 풀필먼트 기능 도입	**정부비축요령** ('22. 9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 상품구성, 마케팅, 재고관리 등 컨설팅 지원	■ 온라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강화를 위한 노하우 교육 강화(대형 온라인몰, 스타트업 등의 성공사례 분석 및 공유)	**수산물유통법** ('20.8.19.)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 중부권 추진('20) • 공급자 : 보령수협, 서천군수협 • 로컬푸드 매장 :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 품앗이 마을(5개 지점), 행복한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 호남권 추진('21) • 공급자 :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 로컬푸드 매장 :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 영남권·제주권으로 확대 • '22년 3월 사업자 공모 예정	**수산물유통법** ('20.8.19.)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신 설)	■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 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연안 어선 임대 및 임대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자부담 50% – 척당 월 최대 250만원(국고 50%분), 최장 2년간 지원(향후 정부안 반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형선박 조종면허 등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 *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만 49세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어선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22. 2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일부 유형에 한해 재활용 허용 • (원칙) 채묘용 등 단순 재사용 또는 사료·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허용 • (예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재활용 유형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야만 허용	■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 시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제철소 소결제, 탈황제, 연안정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해짐 ☞ (참고) 패각 폐기물,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25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2.7.2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폐기물 처리·보관기준 현실화	■ 처리·보관 시 수산부산물의 특징(계절성, 염분 등) 반영없이 일괄 규제	■ 수산부산물의 계절성, 인체 무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리·보관·운반기준을 마련하고, 미생물 처리, 화학처리 등 신공법 적극적으로 도입 가능 ☞ (참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21.6.29. 보도자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2.7.2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
귀어인의 집 조성	(신 설)	■ 귀어인의 집 조성 • (예산) 150백만원 • (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 지방비 50%/ 지자체 • 귀어인의 집 유형 – (주택 리모델링)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이동식주택)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임대운영)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수산정책	**귀농어·귀촌 활성화법** ('22. 1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 귀어학교 개설 • (예산) 500백만원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 지방비 50%/ 해양수산부, 지자체 • 귀어학교 개설 –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 * ('16)경남 통영 경상대, ('17)충남 보령 수산자원연구소, ('18)전남 강진 해양수산과학원, ('19)강원 강릉 강릉원주대, ('20)경기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1)경북 포항 어업기술센터	■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 (예산) 1,340백만원(귀어학교 개설 500백만원 + 귀어학교 교육비 840백만원) •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 50~ 70%, 지방비 30~50%/해양수산부, 지자체 • 귀어학교 개설 –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 * 지정연도(7개소) : ('16)경남 통영 경상대, ('17)충남 보령 수산자원연구소, ('18)전남 강진 해양수산과학원, ('19)강원 강릉 강릉원주대, ('20)경기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2년 개설), ('21)경북 포항 어업기술센터('22년 개설), ('22) 충북 충주 내수면산업연구소('23년 개설) •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 –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22년 6개소 지원 : 경남,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정책자료〉 정책정보〉수산정책	**귀농어·귀촌 활성화법** ('22. 1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2)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및 지속 운영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총 9,550TEU) 운영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총 12,050TEU) 운영('22.2.~) ■ 부산항 신항 신규 터미널 개장('22.6.~)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 (금액)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 • (시점)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 • (확인)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참고)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외무역관리규정** ('22.1.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90)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착수 및 보급지원 확대	■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적 기술 개발 지원 체계 부재 ■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선주에게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 지원	■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착수 •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까지 추진 ■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선주에게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 확대 지원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 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	**친환경선박법** ('20.1.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고시	■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 (대상항만) 부산항 신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8개 항만 • (공급면적) 2030년도 기준 29,699천㎡ 항만배후단지 조성·공급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 (대상항만) 부산항 신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8개 항만 (새만금항에 대하여 필요성 검토) • (공급면적) 2030년도 기준 33,224천㎡ 항만배후단지 조성·공급(세부 면적은 변동 가능)	**항만법** ('22. 하반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0)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시행	(신 설)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	('22.10.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17년 최저임금의 45% 구분 / 봉급액(원) 병장 / 608,500 상병 / 549,200 일병 / 496,900 이병 / 459,100	■ '17년 최저임금의 50% 구분 / 봉급액(원) 병장 / 676,100 상병 / 610,200 일병 / 552,100 이병 / 510,100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도 국방예산 확정	('22.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3:1매칭지원금 시행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4 (적금의 정부지원)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4 (적금의 정부지원)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5 제4항에 따라 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을 해당 적금의 만기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1퍼센트 이자지원금"이라 한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금에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정하는 이자소득 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퍼센트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이라 한다)	병역법 시행령 ('22.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 병영생활관 內 비데 미설치	■ 병영생활관 內 비데 신규 설치 • (보급물량) 전체 변기 수량의 30% • (보급방식) 장병 위생을 고려 '임차'로 추진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7486)
비상근 예비군제도 (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 - 단기 : 연 30일 이내	■ 비상근 예비군 제도 - 단기 : 연 30일 이내 - 장기 : 연 180일 이내(시험적용)	예비군법·병역법 ('22. 3월부터)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 종이 통지서를 생산하여 우편물 교부 • 주로 우편·등기·인편을 통해 교부	■ 모바일 전자문서로 송달 서비스 • 네이버앱,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신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22년 예비군 훈련 시 부터)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3)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보상비 : 47,000원	■ 동원훈련 보상비 : 62,000원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22년 예비군 훈련 시 부터)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위탁)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 1.·2. (생 략) - 〈신 설〉 • ③ (생 략) •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 ⑤·⑥ (생 략)	■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위탁) • ② (좌 동) - 1.·2. (현행과 같음) -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삭 제〉 • ⑤·⑥ (현행과 같음)	「군인 재해 보상법 시행령」 ('22.1.1.)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673)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대상 연령 : 80세 이상	■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대상 연령 : 75세 이상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보도자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2.1.1.)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92)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 전역 후 3년을 기준으로 취업지원 • (원칙)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예외)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 전역 3년 기준 폐지 • (원칙)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3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1.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12.9.)
	■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1회 • (원칙) 취업지원은 1회 지원 • (예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폐지·폐업·휴업·통합·합병이나 그 밖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 1회 더 지원	• (원칙)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총 3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중기복무) 월 25만원 • (장기복무) 월 50만원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중기복무) 월 50만원 • (장기복무) 월 70만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1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1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2~3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제도 개선 ('22. 2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문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	제도 개선 ('22. 1월)
	■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재발급 등 신분증 발급 • 종이 혹은 플라스틱카드 발급	• 민원서류 발급, 제출 및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디지털 신분증 발급(추가)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52)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병무청 정밀 심리검사 실시 •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제도 개선 ('22. 3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6)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창업사유 연기 2회로 제한	■ 창업사유 연기 횟수제한 폐지 (통산 2년 범위 내)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별표〉 ('22. 1월)
	■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졸업 검정고시만 가능	■ 검정고시 응시 연기 초·중·고등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 질병사유 연기 60일 범위 내	■ 질병사유 연기 90일 범위 내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 제한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22. 1월)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지급 단가 인상	■ 중식비 6,000원 지급	■ 중식비 7,000원 지급	제도 개선 ('22. 1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제한없음	■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통틀어 2년 *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병역법 제31조의3 ('22. 6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50%	■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80%	병역법 제73조 ('22. 1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상위 3% 이내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 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	■ 모든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 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22. 1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2)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 발급	■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 (참고)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발급 신청	제도 개선 ('22. 1월)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7)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지원한도 • 3년간 최대 100억원 ■ 평가항목 • 수출관련 평가 항목 배점 (15점~30점)	■ 지원한도 • 5년간 최대 200억원 ■ 평가항목 • 수출관련 평가 항목 배점(25점~40점) • 수출실적 창출 우대·감점 항목 〈신설〉 ■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 〈신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22.1.1. 예정)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5)
착수금 사용기간 확대	■ 업체의 착수금 청구일 이후 180일 이내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한해 착수금을 지급	■ 업체의 착수금 청구일 이후 360일 이내 지출이 계획된 금액에 대해 착수금을 지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22.1.1.)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2) 국방부 전력정책과 (02-748-5613)
지체상금의 합리적 부과	■ 체계업체 및 협력업체 귀책 여부 구분 없이 지체발생 시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부과	■ 협력업체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책임 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 -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체계 등을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에 대해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경우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군수품조달관리규정 ('21.11.2.)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6)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 시험평가 비용 부담 • 개발업체와 정부가 분담하여 부담 ■ 제안요청서 공고 • 과제 선정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공고 ■ 체계업체 유인 제도 • 없음	■ 시험평가 비용 부담 • 핵심부품국산화 : 전액 정부부담 •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가 부담 ■ 제안요청서 공고 • 예비공고 실시 ■ 체계업체 유인 제도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 제안서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 ('21.12.(미정))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5)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신설	(신 설)	■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 100개 업체를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 • 대상 : 국방 신산업 5대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에서 사업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신산업분야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 컨설팅 - (인력·자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참여 우대, 시설 비용 지원 등 - (기술개발) 청 R&D 사업 참여 우대 등 - (수출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절충교역 참여 우대, 사업화 비용 저금리 대출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21.7.12.)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7)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신 설)	■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 대상 :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10년 이내) • 지원예산/한도 : 2억원('22년) / 기업당 최대 1억원(총 소요비용의 75%) •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제공 - 전담컨설팅·멘토링 및 맞춤형 방산 교육 실시 - 보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술지원 - 청 R&D/수출 지원사업 참여, 체계기업 파트너쉽, 해외진출 지원 -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실전 사업화 지원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22. 1월)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전략부품국산화 사업	(신 설)	■ 부품국산화 사업 유형에 전략부품국산화 사업 신설 ■ 최대 500억원 이내의 과제비를 기업 유형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21.12월 개정 예정)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73)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현용 전자여권 •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 추가,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 사진)를 저장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여권법 시행령** ('21.12.21.)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 재외국민 민원포털서비스 이용문의 방법 • 전화, 문의게시판 - 세계 각지의 재외국민 대상 24시간 대응, 동시다수 문의 접수의 어려움 발생	■ 재외국민 민원포털서비스 이용문의 방법 • 챗봇, 전화, 문의게시판 - 자주 묻는 질문 및 단순정보 안내를 챗봇으로 유도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문의사항을 적시에 처리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159, 8226)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신 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시행 •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2.1.21.)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789)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 제35조(교부허가의약품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의약품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처방전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관 또는 약무관 등 전문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수용자 의료용품 공통품목'이 아닌 의료용품의 교부 신청은 교도관회의를 거친 뒤 허가할 수 있다. ③ 의료과장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의료시스템에 입력하고, 개인별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 2항의 교부가 불허된 의약품과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	■ 설명의무 신설(안 제8조 제2항) • 「의료법」 제4조의 '의료인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무관 진료 시 진료 소견 및 처방에 관해 적절히 설명하도록 함 ■ 교부허가의약품 반입 절차 정비 (안 제35조 제1항 ~ 제4항) • (신설) 모든 교부허가의약품을 전문가 감정 후 반입(안 제1항) • (신설) 교부허가의약품 반입 시 처방전 외에 진단서나 소견서 불요(안 제2항) • (신설)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외의 수용자는 불허(안 제3항) ■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규정 신설(안 제40조의3) ■ 지방교정청장의 의료인력 긴급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 제4항) • (신설) 소속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교정청장의 신속한 의료인력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22.1.1.) **법무부 의료과** (02-2110-3278)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 출정으로 인한 보호장비 사용과 장거리 이동 불편 •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받을 권리보장 미흡 ■ 감염병으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 •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 증가	■ 보호장비 사용과 장거리 이동 감소로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 • 보호장비 사용과 외부 출장 감소로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 •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감염병 예방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도모 • 비대면 업무의 활용으로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도모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시행** ('21.11.18.) **법무부 보안과** (02-2110-3887)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지방자치법 제2조3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만 규정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장 신설 • 제1절 설치 •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 제3절 운영	**지방자치법** ('22.1.1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8)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 인구감소지역 미지정,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체계 부재	■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 대책 추진 • (추진방향)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 • (관리방안)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 •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 지방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 –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 지방의회 인사교류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신규임용시험 근거 마련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보도자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2.1.1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9)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민조례발안법	■ 기존 지방자치법 2개 조항 및 동법 시행령 10개 조항으로 규정	■ 15개 조문으로 법률 제정 •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요내용 】 – 청구권자 연령〈법§2〉 : 18세 이상 – 접수기관〈법§2〉 : 지방의회 의장 – 청구요건〈법§5①〉 • 800만 이상 시·도: 1/200 이하 • 800만 미만 시·도,100만 이상 시 : 1/150 이하 • 50만~100만 시·군·구: 1/100 이하 • 10만~50만 시·군·구: 1/70 이하 • 5만~10만 시·군·구: 1/50 이하 • 5만 미만 시·군·구: 1/20 이하 – 조례안 발의〈법§12③〉: 청구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이 발의 – 지방의회 심사 • 의결기간〈법§13①〉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필요 시 1년 이내 연장) • 임기만료로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법§13③〉 – 기타 • 청구인명부〈법§11④〉 보정기간 연장 : 광역 15일 이상, 기초 10일 이상 • 무효서명 기준 구체화〈법§11①〉 •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한 조치 의무화 신설 등〈법§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2.1.13.)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87)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 자치단체별로 운영자금 등 관리 주체 및 관리 방안 상이	■ 운영자금의 지자체 금고 보관·관리 •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 안정적 관리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4.20.)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에 직접 등록 신청	■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례로 등록 신청 간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4.20.)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확대	■ 주택단지, 학교, 유치원 등 20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 참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도 22년 6월 23일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2.6.2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6)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2.1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정책과** (044-201-2372)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과목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포함, 2과목 선택 ■ 선택과목 채점 시 조정점수로 계산	■ 시험 과목 중 고교과목 제외, 전문 2과목 필수과목으로 개편 ■ 조정점수제 폐지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9급 채용 시 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2.1.1.)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5)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044-201-8241)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22.1.1.)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5)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 (044-201-8241)

법제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원회 결정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 제공	■ 공정위·권익위 의결서, 개보위 결정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 • 전체 내용은 hwp형태의 첨부파일 열람 필요 • hwp 파일은 기계판독 및 데이터 활용이 제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공정위·권익위 의결서, 개보위 결정문을 통합하여 제공 • 국민들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지 않고도 화면 내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 • 위원회 결정문 내용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openAPI)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이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상업, 비상업적 무관) 가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10.)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보도자료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4)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 공공 서비스의 거래 촉진 및 서비스 기업 지원을 위한 개방(오픈)형 온라인 상품몰 없음	■ 공공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오픈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서비스 거래 활성화 및 서비스 기업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2. 1월 중순)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042-724-7494)
군 장병 급식 품목, 다수공급자 계약 전면 적용	■ 군 전용 규격(구매요구서)에 따라 총액 계약 • 군식품 입찰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 식품 건 별 계약 • 각급 군부대의 가공식품 선택권 제약	■ 군납 가공식품 조달에 다수공급자 계약 전면 시행 • 다양한 시중 유통 제품을 계약하여 수요 군부대의 선택권 보장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단가계약으로 등록하여 군부대 조달 편의 제고 •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가공식품과 급식 제공	('22.1.1.)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 (070-4056-630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 전문공사 발주 시 28개 업종 대상 • 적격심사, PQ, 종심제 등 전문공사 평가 시 28개 업종을 대상	■ 전문공사 발주 시 14개 업종 및 주력분야 대상 • 전문건설업 대업종 전환에 따라 적격심사, PQ, 종심제 등 전문공사 평가 시 14개 전문업종 및 28개 주력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적격심사, PQ, 종심제 등) ('22.1.1.)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042-724-7350)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로 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는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22.4.20.)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에 자율 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없음 •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 있음 •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의 도로통행 근거 미흡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마련 •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신설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완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22.4.20.)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를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법률에서 규정 • 그 외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장치·기구들은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를 행안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행안부령 개정 중)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22.4.20.)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제약 •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일정 시설의 주변 도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주변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22.4.20.)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

소방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개채용시험 과목변경	■ 필수 3과목 외 선택 2과목 •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필수 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참고) 입법예고 (소방청 공고 제2019-10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22.1.1.)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8)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추가)	■ 다중이용업의 범위 • 총 23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 총 26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6.8.)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특정소방대상물 해당하지 않음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 소방시설 설치대상 아님 • 소방시설 미설치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지정 • 특정소방대상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지정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전기저장시설로 지정되고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 (참고) 소방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로 화재안전 강화" 보도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2.25.)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1)

해양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편의 제공 디지털기반 수상레저 종합포털 운영	■ 조종면허 갱신안내문, 행정처분고지서를 우편발송 ■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 ■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조종면허증 발급	■ 조종면허 갱신안내문, 행정처분고지서를 모바일 발송으로 전환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 단, 모바일 안내·고지서를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발송 ■ 보안이 강화되고 편리한 정부·민간의 간편한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 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 •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실물 조종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22. 3월 중) 간편 본인인증 ('22.3월 중) 모바일 면허증 ('22. 3월 중)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652)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자료 제외 • 제출대상이 서류만으로 한정 (동영상, 사진 등은 제외) • 자료제출명령을 불응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음	■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를 명할 수 있음 • 영업비밀자료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출이 의무화 됨 • 서류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사진 동영상 등이 포함 • 자료제출명령 불응의 불이익을 높임 - 불응 시 자료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신고서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기재사항이 없었음	■ 신고서에 분쟁조정 진행 여부 및 희망 여부 기재란 신설 • 신고인이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21.11.1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개정	■ 신고서에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었음	■ 신고서에 신고인 개인 성명 및 연락처 기재란 신설 • 신고인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 - 다만,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 제보센터를 활용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21.11.1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 분쟁조정 신청 대상 관련 •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없음	■ 분쟁조정 신청 대상 관련 •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이미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조정 신청할 수 있음.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신 설)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행위 제외)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정비	■ 공정거래법 형벌 규정 •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 조항에 따라 위반 행위별 형벌 조항 규정	■ 공정거래법 형벌 규정 정비 •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 폐지 • 형벌규정 삭제 대상 위반행위 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②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부당한 차별취급,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 부당한 조건 부거래 행위를 한 자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일정 거래분야에서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자,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거나 방조한자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5)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도입	■ 회사의 규모에 기반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만 신고의무 부과 • 신고회사(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 상대회사(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 피인수회사의 규모가 현행 규모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서, *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 •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44-200-4364)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시행	(신 설)	■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경쟁사 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 다음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교환은 위법 ①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관련 정보 교환의 합의가 있을 것 ② 합의에 따른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될 것 ③ 별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을 것 ■ 이와 별도로, 사업자 간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예 : 동일한 폭의 가격인상), 그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들이 경쟁변수 관련 담합(예 : 가격담합)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신 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 부과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7.26.)	하도급법 ('22.2.1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제 도입	(신 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7.26.)	하도급법 ('22.2.1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 규율 없음	■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 •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허용 -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 보험업법 승인을 얻은 경우 –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 보험업법 승인을 얻은 경우 –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기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에게 신규 순환 출자의 형성·강화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에 대하여 상장사의 경우 20%, 비상장사의 경우 4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	■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에 대하여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 • 지분율 상향은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신규 자·손자회사에 대해 적용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044-200-4860)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해 100% 자회사, 부채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기업 투자 금지, 총수일가에 대한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 안전장치 마련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044-200-4860)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규정	■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분보유 규정 완화 •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상장·비상장 모두 20% •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상장·비상장 모두 50%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044-200-4860)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인 경우 20% 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준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 • 또한,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율대상에 포함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	공정거래법 ('21.12.30.)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 (044-200-4880)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신 설)	■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발생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의 제한·금지 의무 발생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 신고기관: 법 위반행위 발생 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2.5.19.)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4)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 (이첩) 여부 결정	■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가능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2.2.18.)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수용자에 대한 계호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었음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서 제출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했어도 보상받을 수 없음	■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및 처벌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비용을 지원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2.6.8.)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 해킹 방지 등 기존 정보보안 기술로는 데이터 시대에 국민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에 한계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본격 추진 • 국민의 정보통제권 확보 및 유·노출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기술, 비정형 데이터 內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중점 개발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유형별로 적합한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R&D 로드맵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20.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범죄나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상황별 서비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보호자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항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 ■ 정보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제고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20.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3)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술을 훈련하려는 자는 스스로 가명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 가명정보 활용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가명처리시스템 구매없이 온라인 가명처리 기능 활용 가능 • 재현데이터를 이용하여 가명정보 활용기술 훈련 가능 • 가명정보 결합 신청 전 결합률 미리 확인 가능 • 결합하려는 기관·기업이 보유한 가명정보 매칭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20.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4)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챗봇) 서비스 개시	■ 개인정보 민원신청 등을 위하여 개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함 존재, 개인정보 상담·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지원인력 확충에 한계	■ 개인정보보호 AI 상담(챗봇) 서비스 개시 • 개인정보 웹사이트 분석 및 챗봇과의 연계 방안 설계·구현 • (연계 1) 개인정보 본인확인 내역 조회 등 • (연계 2)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20.8.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